

외국의 개별소비세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박상원 · 송은주 · 김태훈

2009. 12

세 법 연 구 센 터

목 차

I. 서 론	7
II. 한국의 개별소비세와 면세제도	9
1. 개요 및 현황	9
2. 세목별 과세체계	11
가. 개별소비세	11
나. 주세	20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24
라. 담배소비세	29
마. 주행세	31
III. 주요국의 개별소비세와 면세제도	32
1. 미국	32
가. 주세	33
나. 유류관련 제조업자세	36
다. 담배세	42
라. 총기류와 탄약의 판매와 이전	45
2. 일본	47
가. 주세	49
나. 유류세	52
다. 담배관련세	61
라. 전원개발촉진세	65
3. 영국	66
가. 주세	69

나. 유류세	72
다. 담배세	75
4. 독일	77
가. 에너지세	78
나. 전기세	83
다. 담배세	85
라. 코냑세(Liquor tax)	87
마. 알코올함유음료수세	89
바. 맥주세	90
사. 발포성와인과 중간생산물	93
아. 커피세	96
5. 호주	98
가. 알코올(alcohol)세	99
나. 담배세	102
다. 유류세	104
IV. 요약 및 결론	107
참고문헌	109

표 목 차

〈표 Ⅱ-1〉 개별소비세 세수실적	10
〈표 Ⅱ-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12
〈표 Ⅱ-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4
〈표 Ⅱ-4〉 주세의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시기	21
〈표 Ⅱ-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시기	25
〈표 Ⅱ-6〉 담배소비세의 세율 및 과세시기	29
〈표 Ⅲ-1〉 미국 연방 주세 세율	34
〈표 Ⅲ-2〉 미국의 연방정부 유류 관련 소비세	38
〈표 Ⅲ-3〉 연방정부 담배소비세 세율	43
〈표 Ⅲ-4〉 일본의 개별소비세 세수실적	48
〈표 Ⅲ-5〉 일본의 주세 과세대상 및 세액	50
〈표 Ⅲ-6〉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54
〈표 Ⅲ-7〉 석유석탄세 세율	60
〈표 Ⅲ-8〉 담배세 등의 세율 및 세수	63
〈표 Ⅲ-9〉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율	66
〈표 Ⅲ-10〉 영국의 개별소비세 세수 현황	67
〈표 Ⅲ-11〉 영국의 주세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방법	70
〈표 Ⅲ-12〉 영국의 유류세 세율	73
〈표 Ⅲ-13〉 영국의 담배세 세율	75
〈표 Ⅲ-14〉 세목별 조세수입 추세	78
〈표 Ⅲ-15〉 에너지세 과세대상과 세율	79
〈표 Ⅲ-16〉 에너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세 특례	80
〈표 Ⅲ-17〉 에너지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에너지세 특례	81
〈표 Ⅲ-18〉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세 특례	82

〈표 Ⅲ-19〉 전기세의 세율.....	83
〈표 Ⅲ-20〉 담배세 과세대상과 세율.....	86
〈표 Ⅲ-21〉 코냑세 세율.....	88
〈표 Ⅲ-22〉 맥주세 계산 예시.....	91
〈표 Ⅲ-23〉 소규모 주조업자에 대한 감소세율.....	92
〈표 Ⅲ-24〉 발포성와인과 중간생산물 세율.....	94
〈표 Ⅲ-25〉 커피세율.....	96
〈표 Ⅲ-26〉 볶은원두커피가 포함된 제조식품의 커피세율.....	96
〈표 Ⅲ-27〉 수용성커피를 포함한 제조식품의 커피세율.....	97
〈표 Ⅲ-28〉 개별소비세(excise) 세수추세.....	99
〈표 Ⅲ-29〉 알콜 관련 과세대상과 세율.....	100
〈표 Ⅲ-30〉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102
〈표 Ⅲ-31〉 유류 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104

그 립 목 차

[그림 Ⅲ-1] 미국 연방정부 담배소비세 세율과 세수 추이.....	43
---------------------------------------	----

I. 서론

- 개별소비세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과세 형태 중 하나임.
 -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소금이 대표적인 과세품목이었고,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설탕, 맥주, 소금 등에, 중국에서는 차(茶), 어류, 주류, 철(iron) 등에 과세하였음.
(Cnossen 1977)
 -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나 판매세 등과 같은 일반소비세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특정 품목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유지

-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 간에 인적·물적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를 낮추고 소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소비세는 소비 행위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비의 최후단계에서 그 소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징세편의적인 측면에서 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담세는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전가되는 형태임.

- 우리나라의 소비세제 운영방식을 보면 대부분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물품이 제조장에서 출고될 때 소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임.
 - 그러나 반출이라는 것은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 획득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 소득세, 법인세법 등에서는 판매 및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므로, 과세 시점에 있어 소비세와 차이가 있음.
 - 반출시 과세하는 방식은 징수 및 납세관리 측면에서의 장점을 지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출 사실만으로 사전과세하는 것은 제조장 사업자가 조세비용을 미리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비용부담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음.

- 이에 바람직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선진국의 소비세제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개별소비세에 관한 연구는 과세대상 품목의 범위 또는 세율체계 및 세수효과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본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개별소비세제 운영방법과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개별소비세제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II. 한국의 개별소비세와 면세제도

1. 개요 및 현황

-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와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특정세율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고 개별소비세로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들 수 있음.
 - 개별소비세는 과거에 특별소비세로 운영하던 것이었으나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어 2008년부터 명칭을 변경한 것임.
 - － 특별소비세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부가가치세제의 세부담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사치품목에 대해 부과하던 것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세가 2007년부터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목적세임.
-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으며, 각 세목별로 과세체계 및 운영방법,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국세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주행세
-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방법은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일정률을 곱하는 방식인 종가세 형태와 재화 및 서비스의 단위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개별소비세의 경우, 오락기 등, 보석류, 승용자동차는 종가세, 유류는 종량세 형태로 과세함.

-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종량세 형태임.
- 따라서 유류에 대해서는 두 세목에서 모두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음.
- 주세의 경우에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형태로 과세함.
-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종량세 형태임.

□ 과세의무 발생시기

- 개별소비세 중 물품에 대한 과세의 경우 보석과 귀금속을 제외하고는 반출 시점을 과세 시점으로 하고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반출 또는 수입 신고시에 과세가 이루어짐.

□ 세수실적

-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6년에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나, 과세대상 품목이 다양하므로 실제로 어떠한 품목의 소비에 기인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음.
- 주세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감소추세를 보인 데 반해 2008년에 25.07%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주행세의 경우 2005~2007년 기간에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II-1〉 개별소비세 세수실적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국 세	개별소비세	4,574,032	4,399,528 (-3.82)	4,903,453 (11.45)	5,161,140 (5.26)	4,499,380 (-12.82)
	주세	2,588,795	2,595,099 (0.24)	2,405,598 (-7.30)	2,262,282 (-5.96)	2,829,350 (25.07)
	교통에너지환경세	10,065,117	10,287,765 (2.21)	9,593,771 (-6.75)	11,463,503 (19.49)	11,909,295 (3.89)
지 방 세	담배소비세	2,722,318	2,447,918 (-10.08)	2,702,686 (10.41)	2,761,010 (2.16)	n.a.
	주행세	1,750,327	2,292,515 (30.98)	2,709,544 (18.19)	3,270,163 (20.69)	n.a.

주: () 안은 증가율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9.;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8.

2. 세목별 과세체계

가. 개별소비세

1) 개요

□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방법¹⁾

-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따라 종량세 또는 종가세 형태로 과세함.
 - －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종가세 형태로, 5%, 7%, 10%, 20%의 세율이 적용됨.
 - － 석유류에 대해서는 종량세 형태로 과세함.
 - － 특정 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정액세 형태로 부과함.
 - －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종가세 형태로 10%의 세율이 적용됨.
 - － 또한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세율은 <표 II-2>와 같음.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표 Ⅱ-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과세방법

	품목	세율	과세방법	과세시기
과 세 물 품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로열제리·향수	20% 20% 7%	종가세	반출한 때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 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용단, 고급가구	20% ¹⁾	종가세	보석, 귀금속: 판매시 그 외: 반출한 때
	승용자동차 ¹⁾ - 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	10% 5%	종가세	반출한 때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프로판(LPG) 부탄(LPG) 천연가스(LNG) 부생연료유	475원/ℓ (529원/ℓ) 340원/ℓ (375원/ℓ) 90원/ℓ 17원/ℓ 20원/kg 252원/kg(275원/kg) 60원/kg 66원/ℓ	종량세	반출한 때
입 장 행 위	경마장 투전기장 골프장(회원제) 카지노: ① 일반 ② 폐광지역(내국인) ③ 외국인 경륜장·경정장	500원 10,000원 12,000원 50,000원 3,500원 면세 200원	정액세	입장할 때
유 형 음 식 행 위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종가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주: 1. () 는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

2.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제2호 품목의 세율은 기준금액(200만원) 초과금액, 고급가구는 개당 500만원/조당 800만원 초
과금액

2) 1,000cc 이하 경차 과세 제외

□ 납세의무자²⁾

○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³⁾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장소⁴⁾, 과세유흥장소⁵⁾, 과세영업장소⁶⁾의 경영자

□ 과세시기⁷⁾

-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별로 판매, 반출⁸⁾,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부과함.
 - －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
 - －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장소에 입장하는 시점
 - －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시점
 - －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하는 시점

□ 물품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이루어지는데, “반출”이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⁹⁾.

-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해 과세물품이 훼손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반출로 보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¹⁰⁾.
 - －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 － 과세물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 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

3) 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

4) 경마장, 경륜장,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골프장, 카지노

5)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

6)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

7) 개별소비세법 제4조

8) “반출”이라 함은 개별소비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

9)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7

10)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8

상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경우

○ 반출이란 결국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이 판매나 기타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봄¹¹⁾.

- －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¹²⁾
- －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 －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하는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남아있는 경우¹³⁾

〈표 II-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판매장 과세물품	보석·귀금속 판매자	판매가격－기준가격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사진기·시계·모피 등: 반출가격－기준가격 석유류: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관세과세가격(CIF) + 관세상당액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요금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개별소비세의 부과는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비과세 적용 물품¹⁴⁾

○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11) 개별소비세법 제6조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14) 개별소비세법 제2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 미납세 반출¹⁵⁾

- 미납세 반출이란 과세물품 당해 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제도¹⁶⁾임.
- 단순히 보관 장소의 이동이나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이동 및 수출을 위한 이동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음.
 -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 －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 수출 및 박람회 출품 목적 또는 면세 목적으로 반입한 물품을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 이러한 미납세 반출에 대해서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미납세 반출에 해당하는 물품이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 미납세 반출의 경우, 과세물품을 반입한 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봄.

□ 용도별 면세¹⁷⁾

- 국가시책에 의해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

15) 개별소비세법 제14조

16)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4-19...1

17) 개별소비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세액을 면제하며, 해당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수출 및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에 대한 면세
 - 주한외국공관의 공용품 또는 주한외교관의 자가용품에 대한 면세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해당 물품이 면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않거나 용도 변경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개별소비세를 징수함.

□ 조건부 면세¹⁸⁾

- 조건부 면세란 판매·반출·수입시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서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반입 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원료 및 제작용

- ①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②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③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 침 제작용의 것

- 교육 및 학술연구용

- ① 학교·보육시설·과학관·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②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 ③ 승용자동차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④ 고급사진기로서 방송·신문·통신용·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의 것

18) 개별소비세법 제18조

－ 외국무역선 등의 사용

- ①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②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 －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 구입, 환자수송전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구호기관 및 단체에 기증되는 것,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배용품
-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무조건 면세¹⁹⁾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 자가사용 물품
 - － 거주이전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이산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 수증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상패
- 일시적 사용
 -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 군사 및 재외공관 등 특정 용도 사용
 - －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²⁰⁾

19) 개별소비세법 제19조

- 외국에 항행 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 과세물품이 재수입된 후 반출되는 경우
 -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
 -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
-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장비품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내항선이 된 경우에 그 선박 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기타 소모용품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입장행위의 면세

-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등이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중 경기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경우
-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 해외 거주 국민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

□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숙박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20)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혼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않음.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 세액공제 및 환급²¹⁾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등의 경우
 - － 보석 및 귀금속제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하되,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 －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 불량, 변질,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 또는 하치장(荷置場)에 환입한 것²²⁾
- 지정된 기한까지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않거나 면세물품의 용도 변경 등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한 공제나 환급도 적용하지 않음.

□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부탄 및 천연가스의 경우 가정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판가스 및 취사

21) 개별소비세법 제20조

22) 중고품은 제외하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을 포함

난방용 천연가스 세액과의 차액만큼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에게 취사난방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 환급세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환급세액} = \text{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times (\text{부탄의 세율(kg당 252원)에 의한 세액} - \text{프로판가스의 세율(kg당 20원)에 의한 세액})$$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대량 수요자에게 취사난방용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한 환급세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text{환급세액} = \text{취사난방용 천연가스로 판매한 수량} \times (\text{천연가스의 세율(kg당 60원)에 의한 세액} - \text{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세액})$$

나. 주세

1) 개요

□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

- 주세는 주정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에 과세하는 것임.
- 주세의 부과방식은 출고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방식이나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 방식에 의해 부과함.

□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

-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이고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임.
- 따라서 출고 시점 또는 수입신고 시점에 과세의무가 발생함.

□ 세율

- 주정의 경우 1kl당 57,000원으로 종량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발효주는 주종에 따라 5~72%, 증류주는 72%, 기타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은 72%, 발효주는 30%의 세율을 적용함.
-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주류,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각 주종별 세율의 50%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4〉 주세의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과세방식	과세시기
주정 ¹⁾		57,000원/kl(85~95도) 알코올 95도 초과하는 매 1도마다 600원씩 가산	종량세	출고 또는 수입시
발 효 주	탁주	5%	종가세	출고 또는 수입시
	약주	30%		
	청주	30%		
	맥주	72%		
	과실주	30%		
증 류 주	증류식소주	72%	종가세	출고 또는 수입시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기 타 주 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종가세	출고 또는 수입시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종가세	출고 또는 수입시

주: 1.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는 10%(단, 주정, 탁주, 약주는 과세 제외)
 2. 소규모 전통주의 주세율은 각 주종별 세율의 50%
 3.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85도 이상
 2) 불휘발분 2도 이상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주세의 경우 주류반출 및 주류 수입에 대해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 주류반출에 대한 주세 면제²³⁾

- 수출하는 것
- 국내 주둔 외국군대 또는 외국 주둔 국군에 납품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 면제²⁴⁾

-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
-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의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면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제조한 자로 보고 면세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수입자로 보아 즉시 주세를 징수함.

□ 주정에 대한 면세²⁵⁾

○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

23) 주세법 제31조 제1항

24) 주세법 제31조 제2항

25) 주세법 제32조

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함.

□ 미납세 출고²⁶⁾

○ 대상 물품

- 면세 조항에 의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²⁷⁾
-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반출자에게 그 주세를 징수함.
-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²⁸⁾

-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26) 주세법 제33조

27)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

28) 주세법 제34조

□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함.
 - －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함.
- 면세 대상인 수출, 국내주둔 외국군대·외국주둔 국내부대·주한외국공관 등·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공제할 금액이 납부할 주세를 초과할 경우 환급함.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1) 개요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세를 신설하여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적용해 오다 2007년부터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였음²⁹⁾.
 - 별도의 교통세를 신설한 이유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 및 세율은 <표 II-5>와 같음.
-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임³⁰⁾.

29) 적용시한은 2010.12.31임.

30)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관세법을 따름.

〈표 II-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율	과세시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475원/ℓ (529원/ℓ)	반출 또는 수입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340원/ℓ (375원/ℓ)	반출 또는 수입시

주: 1. ()안은 현재 적용하는 탄력세율임.
2.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미납세 반출³¹⁾

○ 대상물품

－ 수출 관련 물품

- ①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 ② 수출물품 등을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 ③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제조 및 원료로 사용

- ①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②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미납세 반출, 수출 및 군납면세, 외교관 면세, 조건부 면세, 무조건 면세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등
-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함.
-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상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않음.

□ 용도별 면세

- 수출 및 군납(주한외국군) 면세
 -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과세 면제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함.
- 주한외국공관 등에서 사용에 대한 면세
- 면세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징수하지 않음.

□ 조건부 면세

-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함.
- 대상물품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구호기관 및 단체에 기증되는 것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

-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함.
- 조건부 면세에 의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조건부 면세 또는 무조건 면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함.

□ 무조건 면세

- 대상물품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함.
- 대상물품
 -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 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 －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

□ 세액의 공제와 환급³²⁾

-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세액을 환급함.
 - －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경우
 -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확인받기 위하여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함.
- 미납세 반출, 조건부 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3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라. 담배소비세

1) 개요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서 제조담배에 부과되는 것임.

- 제조담배의 개비 수(20개비)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음.
- 과세대상 담배는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4종으로 구분함.
- 과세대상별 세율은 <표 II-6>과 같음.

□ 납세의무자 및 과세시기³³⁾

- 납세의무자는 제조사인 한국담배인삼공사, BAT Korea, Philipmorris International 과 수입판매업자 및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임.
-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음.

<표 II-6> 담배소비세의 세율 및 과세시기

과세대상		표준세율	과세시기
흡연용 제조담배	꺾린	20개비당 641원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에서 반출시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엽꺾린	50g당 3,270원	
	각린	50g당 1,150원	
씹는 제조담배		50g당 1,130원	
냄새 맡는 제조담배		50g당 820원	

주: 1.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조정 가능
 2.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33) 지방세법 제225조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미납세 반출³⁴⁾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과세면제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 － 수출
 - －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주한외국군에 납품
 - － 보세구역 내에서의 판매
 - －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선원에 대한 판매
 - － 시험분석 및 연구용
 - －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 －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 해외에서 취업중인 근로자 및 재외공관직원에게 공급하는 담배
 - － 보훈병원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시설에 수용·입원 중인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
 - － 주한외국군의 종사자에게 판매하는 담배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 － 외국에 주류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담배
 - －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담배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껴런 200개비, 엽껴런 50개비, 기

34) 지방세법 제231조, 동법시행령 제174조

타 250그램 이내의 담배

□ 세액의 공제 및 환부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경우
-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마. 주행세

1) 개요

□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가하여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 세율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7%임.
 - － 법정세율은 32%이나 표준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함.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한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면세 품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세 품목과 동일함.

Ⅲ. 주요국의 개별소비세와 면세제도

1. 미국

- 미국의 소비세는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소비세,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州)소비세,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소비세 등으로 구분
 - 연방소비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 형태
 - 주정부 차원의 소비세는 판매세(sales tax)가 근간이며 일부 품목에 개별소비세 부과
 - 지방정부에서도 판매세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함

- 연방정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으로는 유류, 항공운송, 총기, 담배, 주류, 환경오염 물질 등이 있음.
 -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Subtitle D와 E에 근거
 - 재화뿐만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와 시설 등에도 부과
 - 세수입을 기금에 편입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함.
 - － 예: 유류세 세수를 연방고속도로의 건설에 사용

- 주류, 담배, 총기류의 개별소비세 징수는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TTB)에서, 나머지는 국세청에서 관장
 - TTB는 세금징수 이외에도 이들 제품의 허가 및 인증, 광고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관리
 - 과거에는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ATF)가 존재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 ATF의 기능이 TTB와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로 분리

- 후자는 재무부에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산하로 이전

□ 주정부가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품목은 주류, 유류, 담배 등인데, 주에 따라 품목이 달라지며 일반소비세인 판매세에 비해 세수 비중은 높지 않음.

○ 주정부의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는 판매세 세수의 절반 정도

□ 본 소고의 개별소비세 운영방식 및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은 연방정부 개별소비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주정부와 지방정부별로 품목과 세부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운영방식은 대부분 연방정부와 유사

○ 품목에 따라 면세 및 비과세 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류, 유류, 담배, 총기류, 기타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함.

가. 주세

1) 개요

□ 연방정부의 주세는 부피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로 과세대상은 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된 맥주, 와인, 증류주(distilled spirits) 등

○ 주종별로 세율이 다름.

□ 연방정부의 주류 과세는 단순히 세수확보 측면만이 아니라 술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도 함께 동반하고 있음.

○ 제조와 판매를 관리·통제하는 주류행정은 엄격한 규정들로 이루어졌으며, 허가된 자만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시킬 수 있음.

□ 주류행정과 관련되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업체 등은 영업장소를 등록하고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 독주(liquor), 와인, 맥주 등의 양조자나 유통업자
- 증류주 제조자, 수입업자 및 소도매상
- 알코올을 이용하여 주류가 아닌 다른 상품을 제조하는 제조자
- 수출창고의 영업자

□ 주세는 한 달에 두 번 정해진 날짜에 납부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생산자나 수입업자는 보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납부
 - 지난 연도 납부세액이 \$50,000 이하인 자
 -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50,000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연방정부 주세 세율

〈표 Ⅲ-1〉 미국 연방 주세 세율

품목	구분	세금		패키지별 세금	
		기준(단위)	세율	기준(단위)	세율
맥주	기본	배럴(31갤런)	\$18	12온즈캔	\$0.05
	200만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양조자의 최초 6만배럴까지	배럴(31갤런)	\$7	12온즈캔	\$0.05
와인	알콜도수 14% 이하	와인갤런	\$1.07	750ml병	\$0.21
	14% 초과 21% 이하	와인갤런	\$1.57	750ml병	\$0.31
	21% 초과 24% 이하	와인갤런	\$3.15	750ml병	\$0.62
	자연발포(naturally sparkling)	와인갤런	\$3.40	750ml병	\$0.67
	인공탄산(artificially carbonated)	와인갤런	\$3.30	750ml병	\$0.65
	사과와인(hard cider)	와인갤런	\$0.23	750ml병	\$0.04
증류주		proof갤런	\$13.50	750ml병(80 proof)	\$2.14

주: 1. 알콜도수 24% 초과와 와인은 증류주(distilled spirits)로 분류됨

2. 1 와인갤런은 약 3.8리터

3. 1 proof 갤런은 100 proof 또는 알콜도수 50%인 1갤론과 같음.

4. 세율은 2009년 12월 현재 적용세율임.

자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www.ttb.gov),
성명재 · 박임수 (2007)에서 재인용

□ 납세의무의 발생은 주류가 생산되거나 수입될 때이며, 구체적으로 세금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음.

- 국내생산: 제조공장(plant)의 미납세구역(bonded premises)에서 출고되는 때
- 수입주류: 관세 부과 영역으로 이동되는 시점 혹은 보세창고에서 출고되는 시점
 - 미국 내에서 밀봉되는 경우는 국내산처럼 취급

□ 과거에는 주류 제조, 판매, 수입, 도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매년 정해진 금액의 영업세(special tax 혹은 occupation tax)를 납부해야 했으나 2008년 1월부터 폐지

- special tax는 일종의 등록세(licence fee)로서 이를 납부하고 Federal Tax Stamp를 발부받았음
- 2002년 10월에 special tax가 3년간 유예되었으며 2008년부터 폐지되는 법안이 2005년에 통과

2) 면세 운용

□ 증류주 소득세 공제: 주세를 납부한 증류주를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비용을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Sec. 5011)

- 인가된 도매상의 경우는 당해연도에 구매된 증류주 병수에 (정해진) 병당 평균 비용을 곱한 비용만큼 공제
- 도매상이 아닌 자는 주정부나 정부기관과 같은 특정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창고에 보관된 병수에 병당 평균비용을 곱한 비용만큼 공제

□ 소규모 와인 생산자를 위한 감면

- 사과와인(hard cider) 외의 국내산 와인을 생산하는 소규모 와인 양조자 대상
 - 대상자가 세금납부 없이 미납세 창고로 와인을 이동시켰을 경우, 창고 운영자가 향후에 세금을 납부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연도에 생산된 와인의 100,000갤런까지 갤런당 90센트 감면

□ 화재, 홍수 등의 재해에 의해 유실 및 오염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야기된 파손 및 훼손된 주류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음.

○ 미국 내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발생시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제품이 대상

○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금액은 \$250이며, 특별히 대통령에 의해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발생이 있는 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됨.

○ 증류 재료로서 사용된 맥주의 경우 주세 비과세

○ 외교상 외국을 대표하는 자나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되는 맥주로서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것

○ 폐기하기 위해 양조장에서 반출되는 맥주

○ 수출되는 주류

- 과세상의 실수나 잘못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주세가 과세되었을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교육기관, 병원, 실험실 등에서 과학·의학 실험에 사용된 경우

□ 미납세 반출제도

○ 주류가 한 제조장이나 창고에서부터 다른 제조장이나 창고로 이동하는 경우 주류를 전달하는 자는 과세 의무가 없음.

○ 전달하는 제조장과 전달받는 제조장이 법적·실질적으로 독립된 주체일 경우에만 성립

나. 유류관련 제조업자세

1) 개요

□ 유류에 부과되는 연방 소비세는 가장 높은 세수비중을 차지

- 대부분의 수입이 연방고속도로 기금(Highway Trust Fund)에 편입되어 고속도로 인 프라 구축에 사용
- 유류에 대한 과세는 제조단계에서 과세되는 제조업자세와 소매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정유류세로 구별됨.
 - 대부분 자동차나 항공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은 제조단계 즉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이나 미국에 도착하는 시점(수입의 경우)에 과세
 - － 내국세법 Sec. 4081에서 규정
 - 소매단계 과세는 제조업자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법 Sec. 4041에서 규정되며 다음 두 가지 경우로 구분
 - － 일반 대중에 의해 보편적으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special fuels tax 혹은 alternative fuels tax 등으로 불림³⁵⁾)
 - － 제조단계에서 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단계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제조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행(backup tax라고 불림³⁶⁾)
- 제조업자세는 정해진 물품을 판매, 사용, 임대하는 경우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타이어, 연비 낮은 자동차, 석탄, 총기, 화살 등에 부과
 - 완성품으로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을 판매하는 업자도 납세의무가 있음.
 - 면세품을 구매하여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 과세대상 물품으로 재생산하는 자도 제조업자세 납부
-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등 유류관련 제조업자세는 제조업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음.

35) special fuel tax는 backup tax를 포함하여 소매단계 유류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므로, 이하 논의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함.

36) 제조단계에서의 과세는 회피가 가능하므로 소매단계에서의 과세를 통해 징수를 보완(backup)한다는 의미에서 backup tax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판단됨.

〈표 Ⅲ-2〉 미국의 연방정부 유류 관련 소비세

종 류		단위	세율
휘발유(Gasoline)	일반	갤론	\$0.184
경유(Diesel)	일반	갤론	\$0.244
	기차용	갤론	\$0.024
	Diesel-water fuel emulsions	갤론	\$0.197
등유(Kerosene)	일반	갤론	\$0.244
Special Motor Fuel		갤론	\$0.184
액화석유가스(LPG)		갤론	\$0.136
액화천연가스(LNG)		갤론	\$0.119
압축천연가스(CNG)	2006년 9월 30일부터 적용	휘발유 1갤런과 에너지등가	\$0.183
항공용연료(비상업용)	휘발유	갤론	\$0.194
	휘발유 외	갤론	\$0.219
항공용연료(상업용)	휘발유 외	갤론	\$0.044

주: 1. Special motor fuel은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등을 포함하는 액화연료를 지칭함. 그러나 휘발유, 경유, 등유, gas oil, fuel oil 등은 제외

2. 세율은 2009년 12월 현재 적용세율임.

자료: 미국 국세청, Excise Taxes for 2006, IRS Publication 510.

CCH editorial staff publication, U.S. Master Excise Tax Guide-fifth edition, A WoltersKluwer Company, 2005.

성명재 · 박임수 (2007)에서 재인용

□ 유류관련 제조업자세의 발생 행위

○ 유류가 정유공장(refinery)이나 터미널에서 반출될 때³⁷⁾

- 반출(removal)이란 과세 대상 유류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다른 특별 유류 이외의 것을 제조함에 있어서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 하지만 증발, 유실, 훼손된 것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미국 영역에 유류가 도착한 시점

37) 터미널이란 유류저장창고 혹은 배급시설을 말하며, 보통 파이프라인이나 배를 통해 유류가 터미널로 공급됨.

- 소비, 사용, 창고에 저장 등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경우
 -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은 유류가 세무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판매될 때
-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통해 하나의 정유공장이나 터미널에서 다른 정유공장이나 터미널로 벌크운송(bulk transfer)되는 경우는, 정유공장이나 터미널에서 반출되면서도 과세되지 않는 예외 상황에 해당
- 이 경우 유류가 터미널 랙(rack)를 통과하는 시점, 즉 대량(벌크)운송시스템을 벗어나 배급단계(distribution chain)로 넘어가는 시점에 과세
 - 터미널 랙은 파이프라인이나 배가 아닌 수송기구, 즉 유조트럭으로 유류를 이송하는 메커니즘을 말함
 - 터미널 랙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터미널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기록장부에 의해 포지션 홀더(position holder)로 기록되어 있는 자가, 정제공장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제업자가 납세의무자
- 포지션 홀더는 터미널 운영자와 계약을 하고 터미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류를 비축하고 있는 자
 - 만약 포지션 홀더가 국세청에 등록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자도 납세의무를 공동으로 짐.
 - 수입취발유의 경우에도 배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벌크운송이 아닌 경우, 혹은 벌크운송이라도 등록한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입자(enterer)가 납세의무를 가짐.
- 양자 간 교환(Two-party Exchange)은 납세자가 포지션 홀더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사항
- 양자 간 교환은 판매가 아닌 유류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에게 유류를 전달
 - 유류를 전달하는 사람은 터미널 기록장부에 소유한 자로 명기
 - 전달받는 사람에 의해 터미널에서 유류가 반출될 때 거래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

- 장부에 기록하는 것과 국세청에 신고함에 있어, 터미널 소유자는 전달받는 사람을 터미널에서 반출하는 자로 취급
- 이러한 거래는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진행
- 양자 간 교환은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객에게 유류를 대신 수송해 주는 경우에 흔히 발생
 - 예를 들어 A회사의 고객이 가까운 터미널에 있는 B회사의 휘발유를 전달받음
 - 이 경우 B회사가 A회사에 유류를 미리 거래하여 전달한 것으로 처리
 - 터미널에서의 포지션 홀더는, 즉 실제로 유류를 반출하는 B회사는 납세의무가 없음.

2) 면세품목 및 운용방법

□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세에 대한 면세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추가적인 제조 혹은 판매에 사용된 경우
- 수출용 물품
- 선박이나 항공기 공급품
- 정부용품
- 비영리교육단체 물품
- 외교관 물품

□ 유류에 관한 제조업자세는 위의 항목 모두에 대해 면세가 허용

- 추가적인 제조공정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와 면세 구입자가 Form 637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등록
 -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세를 신고, 예탁, 납부하고 국세청에 등록
-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경우에는 면세증명서를 공급
 - 제조업자는 이를 성실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이미 세금이 납부된 연료에 대하여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
 - 2차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부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는 감면세율이 적용
 - 기차용 경유에 적용되던 세율은 2007년에 폐지
 - 도시 간 버스의 경유에는 일단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차액을 환급받음
 - 버스 운영자가 환급 권리를 포기하면 최종 판매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면세가 허용되는 경유는 용도가 다양한데, 적색으로 염색된 경유는 면세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된 경유임을 의미
 - 투명한 색으로 반출되어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면세용으로 사용되면 환급이나 공제가 허용
 - 농업용, 기본적인 정부기능을 위한 지방정부 차량, 도로용이 아닌 연방정부 차량, 학교 버스, 비영리단체, 수출, 가정 난방용
 - 경유기관차와 같이 면세용 연료가 자동차나 기차에 사용되어 과세되는 경우 특별 유류세의 일종인 백업세(backup tax) 납부

- 자동차 등의 연료용이 아닌 펌프에서 판매된 등유나 난방용 기름과 혼합되어 사용된 등유의 경우 최종판매자가 환급 신청 가능

3) 특정 유류세

- 특정 유류세는 자동차나 항공기 연료인 유류에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와는 달리 소매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 전술한 바와 같이 special tax와 backup tax로 구분하기도 함.
 - 과세 대상은 경유 및 등유, 휘발유 대체연료를 포함한 특정 자동차 연료, 압축 천연가스, 비상업용 항공유 등

□ 제조업자세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나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이나 미국에 유입되는 때에 과세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징수되는 시점은 다양

□ 판매로 간주되는 행위의 유형

- 판매자에 의해 직접 구매자의 연료 탱크에 운송되는 경우
- 구매자의 연료탱크가 아닌 벌크공급 탱크에 공급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전체 분량이 과세대상으로 사용된다는 진술서를 제공할 때

□ 특정유류세의 면제대상

- 농업용
- 비도로 상업용
- 선박이나 항공기용
- 수출용
- 정부 및 비영리 교육단체용
- 묘목이나 응급의료용 항공연료

다. 담배세

1) 개요

□ 연방정부의 담배소비세는 쉐련, 시가, 종이담배 등의 제조와 수입에 부과

- 주류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세목 중 하나
- 수입 담배는 관세와 더불어 담배소비세를 함께 납부

□ 담배세율은 개비당 부과되는 종량세이며,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양

〈표 Ⅲ-3〉 연방정부 담배소비세 세율

종류	세율		포장단위당 세율	
소형담배	1000 units	\$50.33	pack of 20	\$1.01
대형담배	1000 units	\$105.69	pack of 20	\$2.11
소형시가	1000 units	\$50.33	pack of 20	\$1.01
대형시가	1000 units	판매가격의 52.75% (\$402.60 per 1,000 한도)	개당 \$0.40 maximum	
파이프 담배	1 lb.	\$2,8311	1 Ounce Tin or Pouch	\$0,1769
씹는 담배	1 lb.	\$0,5033	1 Ounce Tin or Pouch	\$0,0315
코담배	1 lb.	\$1,51	1 Ounce Tin or Pouch	\$0,0944
손으로 만 담배	1 lb.	\$24,78	1 Ounce Tin or Pouch	\$1,5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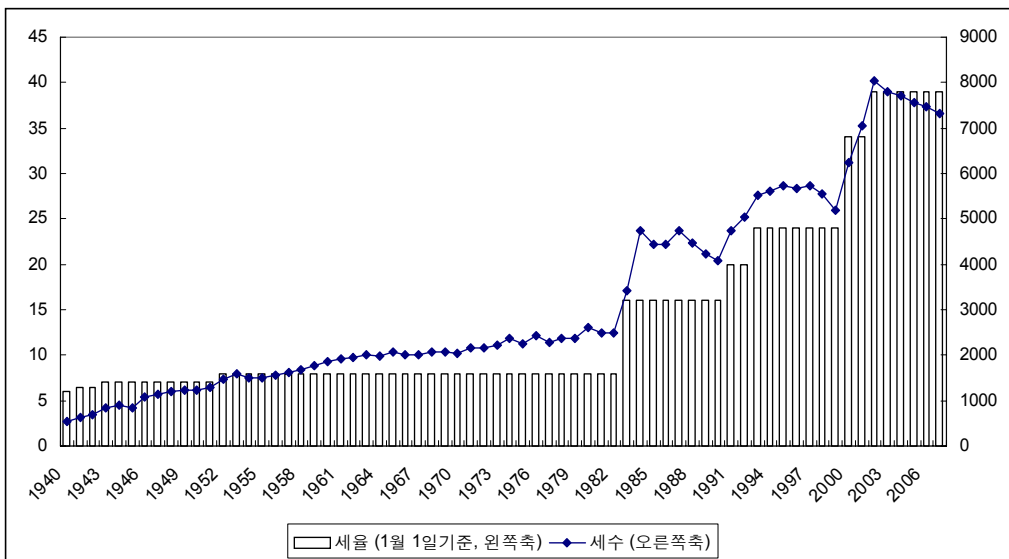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연방정부 담배소비세 세율은 1980년 초반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가, 그 이후 5~6년 단위로 급격하게 상승

○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세수는 하락

[그림 Ⅲ-1] 미국 연방정부 담배소비세 세율과 세수 추이

(단위: 센트/20개비, 백만달러)



□ 납세의무자

-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납세의무를 짐
- 오로지 자신의 소비를 위해 담배를 제조한 자는 담배 제조자에 포함되지 않음
- 한 미납세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전달받은 자가 납세의무를 가짐

2) 면세품목 및 운용방법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 담배제조자의 고용인(employee)에게 제공된 담배
- 실험에 사용된 담배
 - － 수량에 제한이 있음
-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된 담배
- 수출되는 담배
 - －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의 지역에서 소비되는 담배도 비과세

□ 미납세 반출제도

- 미납세 제조장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
- 수출창고(export warehouse)로부터 다른 수출창고로 이동하는 경우
- 수입된 담배가 세관으로부터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경우

□ 화재, 사고, 자연재해 등에 의해 손실되거나 유실된 담배에 대해서는 환급 혹은 공제 (credi)가 허용

라. 총기류와 탄약의 판매와 이전

1) 총기판매

□ 내국세법 32장에 의거하여 제조자, 생산자, 수입업자의 총기 및 탄약의 판매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세율은 피스톨과 리볼버는 판매가격의 10%, 다른 총기류와 탄약은 판매가격의 11%
- 이와는 독립적으로 기관총, 폭발물, 기타 정해진 총기류의 소유 이전에도 종량세 부과

□ 납세의무자

- 제조자(manufacturer): 부품이나 재료를 가지고 총기를 제조한 사람은 납세의무를 가짐.
 - 자신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경우에는 납세의무 없음.
 -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음.
- 총포공(gunsmith): 총을 개조하거나 변형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 수입업자: 총기와 탄약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사람
 -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도 과세대상

□ 납세 시점

- 과세 시점은 다른 개별소비세와 유사하게 제조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 제조장의 미납세 지역이나 보세창고에서부터 반출이 이루어진 시점

□ 면세제도

- 소규모 총기제조자는 2005년 10월 이후 판매된 품목의 감면 혜택을 받음.
 - 1년 동안 50개 이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 정해진 규격을 만족하는 스포츠용 총기의 경우는 면세
- 제조시기, 디자인, 기타 가치 등의 이유로 해서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골동품 총기(Antique Firearms)의 경우

2) 총기 이전과 제조

- 총기류의 소유가 이전될 때 한 자루당 \$200의 세금을 부과
 - 자산의 이전에 의해 과세가 발생하는 것
 - 피스톨, 기관총, 라이플 등의 일반적 총기류 외에 “any other weapon”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 \$5 부과
- 총기이전과세의 면세
 - 미국 연방정부, 정부기관(agency), 주정부 등에 소유 이전되는 경우
 - 골동품, 장식품 같이 실제로 사용될 수 없는 총기류
- 총기, 탄약의 개별소비세 및 총기이전과세와는 별도로 정해진 총기에 대해 총기 제조시에 자루당 \$200의 세금을 부과
 - 등록세(Stamp tax)의 일종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총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
 - 부과시기는 총기를 제조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총기제조자
 - 미국 정부나 공공기관을 위해 제조하는 경우, 미리 허가된(qualified manufacturer) 경우에는 면세
- 총기판매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로 총기이전과세 및 총기제조세도 유사한 미납세 반출제도가 존재

2. 일본

□ 일본의 소비세는 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성되어 있음.

- 일본의 ‘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이 상품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함.
- 개별소비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됨.
 - － 국세로는 주세, 담배세, 담배특별세,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석유석탄세, 전원개발촉진세가 있음.
 - － 지방세로는 지방담배, 골프장이용세, 입탕세가 있음.

□ 국세로 운영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주류, 유류, 담배류 및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의 경우 알코올도수에 따라 1리터당 20~390엔으로 종량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음
- 유류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은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기연료세, 석유석탄세가 있음.
 - － 휘발유에 대해서는 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가 모두 부과되고 있음.
 - 지방휘발유세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이 지방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사용되는 특정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됨에 따라 ‘지방도로세’라는 명칭으로 도입된 것임.
 - 그러나 도로특정재원제도가 2009.4.1. 폐지됨에 따라 부과 폐지에 관한 논의가 많았으나 ‘지방휘발유세’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한 세율로 계속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
 - 따라서 휘발유 1kl당 휘발유세 48,000엔과 지방휘발유세 5,200엔을 합한 53,800엔이 휘발유세 및 지방휘발유세로 부과되고 있음.
 - － 석유가스세는 자동차용 석유가스에 부과되는 것으로 1kl당 17.5엔의 세율로 부과함.
 - － 특별히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1kl당 26,000엔의 세율로 항공

기연료세를 부과함.

- 담배류에는 국세인 담배세와 담배특별세 외에 지방세인 지방담배세도 부과됨.
- 기타 세목으로 전기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에 부과하는 전원개발촉진세가 있음.

□ 과세방법은 대부분 종량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주류, 유류, 담배류 모두 반출 시점에 과세의무가 발생하는 형태임.

- 또한 수출 및 특정용도에 대한 면세제도 및 미납세 반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표 Ⅲ-4>는 2004~2007년 기간 중에 각 개별소비세의 세수 추이 및 국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줌.

- 주세의 경우 2004년 3.6%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07년에는 3.0%를 차지하고 있음.
- 유류와 관련하여 휘발유세의 비중이 2004년에 4.8%에서 2007년에 4.1%로 감소한 것 외에 다른 세목에서는 비중이 변화가 없음.
- 담배세도 역시 2004년에 2.0%에서 2007년에 1.8%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음.

<표 Ⅲ-4> 일본의 개별소비세 세수실적

(단위: 억엔)

		2004	2005	2006	2007
주세		16,599 (3.6)	15,853 (3.2)	15,473 (3.2)	15,242 (3.0)
유류세	휘발유세	21,910 (4.8)	21,676 (4.4)	21,174 (4.3)	21,105 (4.1)
	석유가스세	143 (0.0)	142 (0.0)	140 (0.0)	137 (0.0)
	석유석탄세	4,803 (1.1)	4,931 (1.0)	5,117 (1.0)	5,129 (1.0)
	항공기연료세	880 (0.2)	886 (0.2)	905 (0.2)	880 (0.2)
담배세		9,097 (2.0)	8,867 (1.8)	9,272 (1.9)	9,253 (1.8)
전원개발촉진세		-	-	-	3,525 (0.7)
국세 계		455,890(100.0)	490,065(100.0)	490,691(100.0)	510,182(100.0)

주: () 안은 국세 비중임.

자료: 일본국세청, 국세청통계연보, 2007. <http://www.nta.go.jp/kohyo/tokei/kokuzeicho/h19/h19.pdf>

가. 주세

1) 개요

□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부담하는 간접소비세로서 종량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함.

-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발포성주류, 양조주류, 증류주류, 혼성주류의 4종류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 및 보세지역으로부터 주류를 인수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³⁸⁾.

- 주류의 제조자의 경우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주류를 인수하는 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주류를 인수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 다음의 경우에는 주류의 반출 또는 인수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발생함.

－ 반출로 간주되는 경우

- 주류 등이 주류 등의 제조장에서 음용되었을 경우³⁹⁾.
- 주류의 제조 면허에 첨부된 기한이 경과했을 경우, 제조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및 제조 면허가 소멸했을 때 제조장에 주류가 현존하는 경우⁴⁰⁾.
- 주류의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 등이 체납처분 등의 사유에 의해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가치가 환산되었을 경우⁴¹⁾.

－ 인수로 간주되는 경우

- 주류 등이 보세지역에서 음용되었을 경우⁴²⁾.

38) 주세법 제6조

39) 주세법 제6조의3 제1항 제 1호

40) 주세법 제6조의3 제1항 제 2호

41) 주세법 제6조의3 제1항 제 4호

42) 주세법 제6조의3 제3항

□ 세율

〈표 Ⅲ-5〉 일본의 주세 과세대상 및 세액

(단위: 엔)

	과세대상 구분	알콜도수	1리터당 세액	과세방법
발포성주류	맥주	20도 미만	220엔	종량세
	발포주(맥아비율 25~50%)	10도 미만	178엔	
	발포주(맥아비율 25% 미만)	10도 미만	134엔	
	그 외의 발포성 주류	10도 미만	80엔	
양조주류	청주	22도 미만	120엔	종량세
	과실주	-	80엔	
	그 외의 양조주	20도 미만	140엔	
증류주류	소주	20도	200엔 ¹⁾	종량세
	위스키/브랜디/스피리츠	37도	370엔 ¹⁾	
혼성주류	리큐어/감미 과실주	12도	120엔 ¹⁾	종량세
	합성 청주	-	100엔	
	미림	-	20엔	
	분말주	-	390엔	
	일본 주세법상의 분류용어	20도	220엔 ²⁾	

주: 1.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기준도수에서 1도 증가당 10엔씩 가산됨.

2) 기준도수에서 1도 증가당 11엔씩 가산됨.

자료: 일본국세청, <http://www.nta.go.jp/shiraberu/senmonjoho/sake/qa/01/02.htm>, 2009.11.

2)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비과세·감면⁴³⁾

○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반출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등에는 주세를 면제함.

－ 다만, 법정기한까지 해당 주류가 확실히 인수처에 인수되었거나 외국에 수출된 것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3) 주세법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 수거 주류 등의 비과세⁴⁴⁾

- 식품위생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약사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용으로 수거되는 주류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경우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납세 반출⁴⁵⁾

- 주류 제조자가 다음의 주류를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부터 다음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반출과 관련되는 주세를 면제함.
 - － 주류 제조자가 주류를 원료로 하기 위한 주류를 해당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주류의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수출업자(외부로부터 구입한 주류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주류의 수출을 행하는 자)가 수출하기 위한 주류를 해당 주류의 창고⁴⁶⁾로 반출하는 경우
 - － 자기의 다른 주류의 제조장 또는 창고에 이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류의 제조장 또는 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 － 다른 주류 제조자의 제조장 또는 창고에 이입하기 위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다른 주류 제조자가 해당 이입을 한 후 상표를 표시하고 반출하는 것
 - 다른 주류 제조자가 용기에 채우는 것을 위탁받아 해당 위탁을 한 사람의 주류의 제조장 또는 창고로 반출하는 것
 -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가격 환산에 관련된 주류의 제조장으로부터 이입하는 해당 가격환산과 관련된 것
- 이러한 미납세 인출은 해당 주류제조자가 해당 미납세 반출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반출 관련 주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서⁴⁷⁾에 해당 주류가 미납세인출에 해당하는 것에 관한 명세를 기재한 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44) 주세법 제6조의 4

45) 주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46) 해당 창고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창고에 한정함.

47) 주세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는 적용되지 않음.

□ 미납세 인수

- 주류제조자가 다음의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다음에 지정하는 장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수속에 의해 그 보세지역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해당 인수와 관련되는 주세를 면제함.
 - －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주류를 해당 주류를 원료로 하는 주류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경우
 - － 주류제조자가 정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주류 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또는 장치장
 - － 주류제조자가 그 주류의 제조장으로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수출된 것을 해당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하기 위한 것에 한함) 해당 주류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것

□ 수출면세

- 주류 제조자가 수출하는 목적으로 주류를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출과 관련되는 주세를 면제함.
-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반출을 한 주류제조자가, 해당 반출을 한 날이 속하는 신고서에 해당 주류가 수출되었던 것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유류세

1) 휘발유세 및 지방휘발유세

가) 개요

□ 휘발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는 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가 있음.

- 휘발유세와 지방휘발유세를 합해서 ‘가솔린세’라고 칭하기도 하며, 두 가지 세목 모

두 국세이고 간접세이자 목적세임.

□ 휘발유세란 휘발유세법에 근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휘발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지방휘발유세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양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휘발유에 과세하는 것임.

○ 2009년 4월 1일 도로특정재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도로세’에서 현재의 ‘지방 휘발유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음.

－ 도로특정재원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지방휘발유세의 대부분은 도로재원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재원을 양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휘발유에 과세하는 근거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해 도로를 훼손시키는 자에게 도로의 정비, 보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임.

• 즉, 휘발유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수익자 부담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휘발유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발생

○ 납세의무자는 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휘발유를 인수하는 자임.

○ 휘발유 제조자의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한 휘발유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휘발유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한 자는 인수한 휘발유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함⁴⁸⁾.

□ 휘발유세의 과세표준

○ 휘발유세의 과세표준은 휘발유의 제조장으로부터 인출된 휘발유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한 휘발유의 수량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까지 저장 및 수송으로 인해 감소하는 휘발유의 수량(1.35%)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함⁴⁹⁾.

48) 휘발유세법 제3조

□ 지방휘발유세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발생

- 휘발유세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제조자의 경우 휘발유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휘발유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휘발유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는 그 인출하는 휘발유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함⁵⁰⁾.

□ 세율

- 법정세율은 휘발유세 1kl당 휘발유세 24,300엔, 지방휘발유세 4,400엔이지만 잠정 조치에 의해 휘발유 1kl당 휘발유세 48,600엔과 지방휘발유세 5,200엔을 합한 53,800엔을 부담하고 있음.
- 1973~1977년도의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의 재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잠정조치로서 「조세특별조치법」 제89조 제2항에 의해 휘발유세에는 기본세율 24,300엔에 잠정세율 24,300엔이 추가되었고 지방도로세는 기본세율 4,400엔에 잠정세율 800엔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음.
- 잠정세율 조치는 30년 이상 연장되어 왔고 2007년도 말에 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다시 연장하는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포함한 2008년도 세제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급격한 원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민주당 등이 갑자기 폐지 방침을 내세움에 따라 2008년 3월 31일까지 법안이 가결되지 않아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후 잠정세율이 부활되어 2008년 5월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휘발유 1kl당 53,800엔의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음.

〈표 Ⅲ-6〉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단위: 엔/kl당)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	계
기본세율	24,300	4,400	28,700
잠정세율	24,300	800	25,100
계	48,600	5,200	53,800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49) 휘발유세법 제8조

50) 지방휘발유세법 제5조

나) 면제품목 및 운영방법

(1) 휘발유세

□ 미납세 반출

- 휘발유의 제조자가 다음의 휘발유를 그 제조장으로부터 해당되는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출과 관련되는 휘발유세를 면제함⁵¹⁾.
 - － 휘발유의 제조자가 휘발유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휘발유를 해당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 제조장으로 반출한 경우
 - － 수출업자(구입한 물품의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상시 물품의 수출을 행하는 것)가 수출하기 위한 휘발유를 해당 휘발유의 저장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 － 휘발유의 제조자가 휘발유의 규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휘발유의 규격을 조정하는 휘발유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휘발유의 제조자가 휘발유의 제조장에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휘발유를 해당 휘발유의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제조원 판매업자에 한함)가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휘발유를 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장소 중 휘발유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휘발유세의 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청 장관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 미납세 인수

-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지역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인수와 관련된 휘발유세는 면제함⁵²⁾.
 - － 휘발유의 제조자가 휘발유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휘발유를 보세지역으로부터 당해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휘발유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경우
 - － 휘발유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 한함)가 휘발유의

51) 휘발유세법 제14조 제1항, 휘발유세법 시행령 제5조, 휘발유세법 시행규칙 제1조

52) 휘발유세법 제14조의2 제1항, 휘발유세법 시행령 제7조, 휘발유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격을 조정하기 위한 휘발유를 해당 휘발유의 규격을 조정한 휘발유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경우

- 휘발유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휘발유의 제조자에 한함)가 휘발유의 제조장에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휘발유를 해당 휘발유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경우
- 휘발유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함)가 장기간 저장하기 위한 휘발유를 휘발유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장소 중 휘발유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휘발유세의 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세청 장관이 지정한 장소로 인수하는 경우

□ 수출면세

- 휘발유의 제조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휘발유세를 면제함⁵³⁾.

□ 기타 면세

○ 반출과 관련한 등유의 면세

- 휘발유의 제조자가 휘발유 중 등유에 해당하는 것을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경우에는 해당 반출에 관계된 휘발유세를 면제함⁵⁴⁾.
 - 이는 반출한 휘발유의 제조자가 해당 반출일이 속하는 월의 휘발유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휘발유 중 등유에 해당한 것이 반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인수와 관련한 등유의 면세

- 휘발유 중 등유에 해당한 것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려는 자가 그 보세지역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인정을 받았을 때는 해당 인수와 관계된 휘발유세를 면제함⁵⁵⁾.

53) 휘발유세법 제15조 제1항

54) 휘발유세법 제16조 제1항, 면세가 적용되는 등유의 규격은 공업표준화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본공업규격에 정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인화점 시험방법 및 연료유의 증류시험방법에 의하고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인화점이 30도 이상이고 초유점이 140도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임.

55) 휘발유세법 제16조의2 제1항

○ 항공기연료용 휘발유의 면세

- 휘발유의 제조자가 항공기 연료에 해당하는 탄화수소유를 그 제조장으로부터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제공되는 장소로 반출한 경우에는 해당 반출에 관계된 휘발유세를 면제함⁵⁶⁾.
- 또한 휘발유를 보세지역에서 항공기연료용으로 인수하려는 자가 정령으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세지역 소재지 관할 세관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인수와 관련된 휘발유세를 면제함⁵⁷⁾.

□ 반입된 휘발유세액의 공제

-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휘발유가 해당 제조장에 다시 반입되는 경우, 반출시 납부한 휘발유세액은 당월 신고서에서 공제함.

(2) 지방휘발유세

- 휘발유세법에 의해 미납세 반출, 미납세 인수, 수출면세, 기타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휘발유에 대해 지방휘발유세도 과세 면제함⁵⁸⁾.

2) 석유가스세

가) 개요

- 자동차용 석유가스 용기에 충전되는 석유가스에 과세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발생⁵⁹⁾

- 석유가스를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는 충전하는 자
- 석유가스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자

56) 휘발유세법 제16조의3 제1항

57) 휘발유세법 제16조의4 제1항

58) 지방휘발유세법 제6조

59) 석유가스세법 제4조

○ 과세표준⁶⁰⁾

- － 석유가스를 충전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석유가스의 중량입
- 세율은 과세석유가스 1kg당 17.5엔의 종량세율을 적용함.
- 세수는 국가 및 지방의 도로정비재원에 충당됨.

나)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수출면세

- 석유가스의 충전자가 수출하는 목적으로 석유가스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출과 관계된 석유가스세를 면제함.
-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월의 신고서에 해당 석유가스가 수출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음.

□ 특정용도 면세

- 석유 가스의 충전자가 원료용 또는 열원용(熱源用)으로 제공하는 석유가스를 충전장으로부터 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에는 석유가스세를 면제함⁶¹⁾.
- － 해당 석유가스가 지정된 용도에 지정된 장소로 반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세액의 공제

- 석유가스의 충전자가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 석유가스를 해당 석유가스 충전장으로 환입하는 경우 해당 반입이 있던 다음 달의 신고서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함.
- 석유가스 충전자가 다른 석유가스의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하였거나 보세지역으로

60) 석유가스세법 제9조

61) 석유가스세법 제12조, 제13조

부터 인수한 과세 석유가스를 석유가스 충전소에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하는 때에는, 반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신고서에서 해당 반출 석유가스에 대하여 다른 충전장에서 기납부한(또는 납부할) 석유가스 세액을 공제함.

- 석유가스의 충전자가 그 석유가스의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 석유가스의 판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취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⁶²⁾가 있는 것에 한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취할 수 없게 된 판매대금과 관련 석유가스세액을 공제함.
 - － 이때 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주소 및 이름 또는 명칭, 해당 석유가스의 충전장의 소재지 및 명칭, 판매 대금을 수취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석유가스의 충전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 석유가스를, 자동차용 석유가스 용기에 충전하지 않고 충전장으로 반입한 후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기납부한(또는 납부할)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함.

3) 석유석탄세

가) 개요

- 석유석탄세는 석탄석유세법에 근거하여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가스탄화수소 및 석탄에 부과하는 것임.
- 납세의무자는 채취자 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자임.
 - 원유, 가스탄화수소 및 석탄의 채취자는 그 채취장으로부터 반출한 원유, 가스탄화수소 및 석탄에 석유석탄세를 납부하여야 함.
 - 원유 및 석유제품, 가스탄화수소 및 석탄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는 그 인수하는 원유 등에 석유석탄세를 납부하여야 함.

⁶²⁾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정령 및 재무성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세율은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의 경우 1kl당 2,040엔, 가스탄화수소의 경우 1톤당 1,080엔, 석탄은 1톤당 700엔임.

〈표 Ⅲ-7〉 석유석탄세 세율

과세대상		단위	세율		
			2003.10.1~	2005.4.1.~	2007.4.1.~
원유 및 수입석유제품		1kl당	2,040엔	2,040엔	2,040엔
탄화수소	천연가스	1톤당	840엔	960엔	1,080엔
	천연가스 이외	1톤당	800엔	940엔	1,080엔
석탄		1톤당	230엔	460엔	700엔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나)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미납세 반출

- 수출업자가 채취장에서 원유 등을 수출하기 위한 창고로 반출한 경우 석유석탄세를 면세함.

□ 반입에 대한 세액공제

- 원유, 가스탄화수소 및 석탄(‘원유 등’이라 함)의 채취자가 반출한 원유 등을 해당 채취장에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 원유 등의 채취자가 다른 채취장에서 반출되었던 원유 등을 반입했을 경우에도 해당 원유 등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4) 항공기연료세

가) 개요

- 항공기연료세는 항공기연료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며, 항공기에 실린 항공기연료 1kl당

26,000엔의 세율로 부과됨.

-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고 항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발동기를 가지는 글라이더임.
- 원칙적으로 항공기연료세의 납세지는 항공기 연료가 실리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청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승인을 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납세지 특례가 인정됨.
- 따라서 대부분의 항공기는 사전에 납세지를 신고해 어디서 급유해도 한 개소에서 납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나)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비과세⁶³⁾

- 외국으로부터 일본에 도착하는 외국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또는 내국화물을 일본과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신고자 하는 경우의 세관신고⁶⁴⁾에 의해 세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유상의 국내 운송용에 제공되지 않는 외국왕래기에 실리는 항공기연료에는 항공기연료세를 부과하지 않음.
- 휘발유세 및 지방휘발유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실한 항공기연료에는 항공기연료세를 부과하지 않음.

다. 담배관련세

1) 개요

-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로는 국세로서 담배세와 담배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인 지방담배세가 있음.
- 담배세는 담배세법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제조담배에 대해 과세함.

63) 항공기연료세법 제8조

64) 관세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

- 따라서 과세대상은 제조담배이고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자와 제조담배를 보세지역에서 인출하는 자임.
- 담배특별세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채무의 승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확보 관련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조담배에 부과하는 것임.
 - 일본국유철도청산사업단(구 국철) 및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의 부채를 일반회계에 승계시킴으로써 발생한 부채를 보전하기 위해 1997년 신설되었으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담배세와 동일함.
- 지방담배세는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도부현 및 시정촌의 도매판매업자 등이 제조담배를 소매판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매도를 행하는 도매판매업자 등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도부현담배세와 시정촌담배세가 있음.
 - 과세대상은 제조담배이고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도매판매업자 등임.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발생

- 제조 담배의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해 담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제조 담배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사람은 인수하는 제조 담배에 대해 담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세율

- 일반적인 담배 형태인 지권담배를 기준으로 할 때, 세액은 1,000개비당 국세로서 담배세 3,552엔, 담배특별세 820엔과 지방담배세는 도부현담배세가 1,074엔, 시정촌 담배세가 3,298엔 부과됨.
- 2009년 예산에 따르면, 국세인 담배세의 세수가 1조 377억엔, 지방세인 담배세가 1조 418억엔으로 총담배관련세 세수는 2조 795억엔임.

〈표 Ⅲ-8〉 담배세 등의 세율 및 세수

(단위: 천개비당 엔, 억엔)

		국세			지방세			합계
		담배세	담배 특별세	소계	도부현 담배세	시정촌 담배세	소계	
세액	지권담배, 파이프담배, 엽권담배 등	3,552	820	4,372	1,074	3,298	4,372	8,744
	구 3급품의 지권담배	1,686	389	2,075	511	1,564	2,075	4,150
세수	2009년 예산 지방재정계획금액 (억엔)	8,430	1,947	10,377	2,559	7,859	10,418	20,795

- 주: 1.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담배특별세는 1998.12.1.부터 실시
 3. 국세 및 지방세인 담배세의 세율은 2006.7.1.부터 적용되는 세율임.
 4. 국세인 담배세수(8,430억엔) 중 25%는 지방교부세로서 지방에 배분됨.
 5. 구 3급품의 지권담배란 에코, 새잎, 해타, 골든버트, 바이올렛 및 우르마의 6종목 지권담배를 말함.

자료: <http://www.mof.go.jp/jouhou/syuzei/siryu/127.htm>

2)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미납세 반출

○ 담배 제조자가 다음의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음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담배세를 면제함.

- － 제조 담배 제조자가 제조 담배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담배를 그 원료로 하는 제조 담배의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 수출업자가 수출하기 위한 제조담배를 해당 제조 담배의 창고로 반출하는 경우
- － 수출업자가 수출하기 위한 제조담배로서 그 제조장의 창고가 좁거나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

○ 미납세 반출의 경우 각 해당 사유의 제조 담배가 해당 장소에 이입되었다는 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미납세 인수

- 제조 담배를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담배를 원료로 하는 담배의 제조장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미납세 인수를 허용함.

□ 수출 면세

- 제조 담배 제조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담배를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담배세를 면제함.
- 수출면세에 해당하는 반출이 속하는 월의 신고서에 해당 제조 담배가 수출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과세가 끝난 수입제조담배의 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의 담배세 환급

- 특정 판매업자가 스스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수한 제조 담배로서 판매를 위해 소지하는 것을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 담배에 대해 납부된 또는 납부할 담배세액을 환급함.
 - －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수출을 한 수출지 등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수출신고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환입된 경우의 담배세의 공제 등

- 담배 제조자가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를 해당 제조장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출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은 해당 반입이 있던 월의 신고시 공제함.
- 제조 담배 제조자가 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 담배를 다른 제조 담배의 제조장에 이입했을 경우 해당 이입을 환입으로 간주하여 규정을 적용함.

라. 전원개발촉진세

1) 개요

□ 과세목적 및 과세물건⁶⁵⁾

- 원자력발전시설, 수력발전시설, 지열발전시설 등의 설치 촉진 및 운전의 원활화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 및 발전시설의 이용 촉진 및 안전의 확보 및 발전시설에 의한 전기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전기사업자의 판매 전기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세를 부과함.
- 국세의 하나로 1974년 도입될 시점의 과세목적은 당시의 오일쇼크로 인해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를 모색하고 원자력발전소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음.
- 2006년까지는 세수 전액이 전원개발촉진대책회계에 포함되었고 2007년도부터는 행정개혁촉진법에서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와 석유석탄세에 의한 석유 및 에너지수급구조고도화대책특별회계가 에너지대책특별회계에 통합되었음.

□ 납세의무자⁶⁶⁾

- 일반전기사업자는 판매 전기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세를 납부하여야 함.

□ 세율은 1,000kW/시에 대하여 375엔임⁶⁷⁾.

- 2003년에 석유석탄세법의 시행으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65)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

66)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67)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표 Ⅲ-9〉 전원개발촉진세의 세율

(1,000kW당 엔)

적용기간	세율
~ 2003. 9. 30	445
2003. 10. 1. ~ 2005. 3. 31.	425
2005. 4. 1. ~ 2007. 3. 31.	400
2007. 4. 1. ~	375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면세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 없음.

3. 영국

☐ 영국의 개별소비세(Excise duty)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주세(Spirits duty, Beer Duty, Wine and made perry)
- 유류세(Hydrocarbon oils duty)
- 담배세(Tabacco duty)
- 환경관련세(Landfill tax, Climate change levy, Aggregates Levy)
- 항공세(Air Passenger duty)
- 복권세(Betting, gaming and lottery)

☐ 2008-09년을 기준으로 각 세목별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유류세가 전체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주세와 담배세가 각각 18.2%, 17.6%를 차지하고 있음.

- 환경관련세인 Landfill tax, Climate change Levy, Aggregates Levy는 각각 1996년, 2001,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세수는 4.3%에 불과함.

〈표 Ⅲ-10〉 영국의 개별소비세 세수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유류세	Hydrocarbon oil	21,916	22,147	22,786	23,313	23,438	23,585	24,905	24,615
담배세	Tobacco	7,754	8,054	8,091	8,100	7,959	8,149	8,094	8,219
주세	Spirits	1,919	2,273	2,362	2,385	2,309	2,256	2,374	2,358
	Beer	2,899	2,935	3,044	3,101	3,076	3,072	3,067	3,127
	Wine and made wine	1,982	1,936	2,006	2,233	2,308	2,385	2,641	2,741
	Cider and perry	155	153	153	157	168	200	220	244
	소계	6,955	7,298	7,565	7,876	7,861	7,913	8,302	8,470
복권세	Betting, gaming and lottery	1,439	1,292	1,347	1,421	1,421	1,391	1,481	1,474
항공세	Air passenger duty	806	816	791	864	905	971	1,994	1,862
환경 관련세	Landfill Tax	502	541	607	672	733	804	877	954
	Climate Change Levy	555	829	832	764	744	712	688	716
	Aggregates Levy	0	247	339	334	326	321	339	334
	소계	1,057	1,617	1,778	1,770	1,803	1,837	1,904	2,004
계		39,928	41,224	42,358	43,344	43,387	43,846	46,680	46,644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stats/tax_receipts/tax-receipts-and-taxpayers.pdf

□ 본 보고서에서는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류, 유류, 담배류에 관하여 과세운영방법과 비과세 및 면세 제도를 소개함.

□ 주류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증류주, 맥주, 과일주, 와인으로 구분하고 각 주종 내에서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납세의무는 주류의 생산시점 또는 수입시점에 발생하지만 실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창고에서 해당 주류가 반출되는 시점임.

- 반출시 과세된 주류가 적절한 제품의 제조 및 생산에 사용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함.
- 의료 및 과학 용도로 사용되거나 수출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주류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면세가 적용됨.

□ 유류에 대한 과세

- 모든 차량 및 난방용 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대상 유류는 중유, 경유, 할인된 유류 및 바이오연료, 바이오연료, 주행용가스연료로 구분됨.
- 유류의 수입시점 및 생산된 유류가 창고에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함.
- 전기발전에 사용된 유류 및 원예업에 사용된 중유 등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루어지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형태임.
- 소비세 비과세 설비에 사용되는 유류의 경우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

□ 담배류에 대한 과세

- 담배류는 쉐련, 시가, hand-rolling tobacco,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로 분류함.
 - － 세율은 쉐련을 제외한 담배류는 무게를 기준으로 종가세 형태로 부과하지만 쉐련의 경우에는 소매가격의 일정률을 곱한 값과 개비당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함.
- 면세대상은 과학 및 의료연구용, 성분검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임.
-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폐기 및 재활용 처리되는 제품에 한해 미납세 반출이 허용되고 고객으로부터 반입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납부세액의 환급 등이 허용됨.

가. 주세

1) 개요 및 현황

□ 과세대상

- 주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류는 증류주(Spirits duty), 와인(Wine and made-wine duty), 맥주(Beer duty), 과실주(Cider and perry duty)로 구분함.

□ 세율

- 2009 Finance Bill에서 주류에 대한 세율이 2%씩 인상되었고 2009년 4월 23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은 <표Ⅲ-11>과 같음.
 - － 증류주의 경우 알코올 리터당 £22.64, 맥주는 100리터당 £16.47, 과실주는 알코올도수에 따라 제품 100리터당 £31.83~207.20, 와인의 경우도 알코올도수에 따라 100리터당 £65.94~285.33까지임.

□ 과세방법

- 증류주(Spirits)는 증류되는 시점 또는 제조되는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창고에서 반출될 때 납부할 의무가 발생함.
 - － 양조장 또는 창고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인 감소분이 아니거나 또는 적절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맥주, 과실주(cider)⁶⁸⁾, 와인(wine and made-wine)은 생산시점 또는 영국에 수입된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등록된 장소에서 반출될 때 과세가 이루어짐.

(68) 알코올도수가 1.2% 초과 8.5% 미만인 사과주 또는 배주

〈표 Ⅲ-11〉 영국의 주세 과세대상별 세율 및 과세방법

	과세대상	단위	세율	과세방법
증류주	Spirits	per litre of pure alcohol	£22.64	반출과세
	Spirits-based Ready to Drinks	per litre of pure alcohol	£22.64	
맥주	Beer	per hectolitre per cent of alcohol in the beer	£16.47	반출과세
과실주	Still cider and perry: 1,2~7,5%	per hectolitre of product	£31.83	반출과세
	Still cider and perry: 7,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47.77	
	Sparkling cider and perry: 1,2~5,5%	per hectolitre of product	£31.83	
	Sparkling cider and perry: 5,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207.20	
와인	Wine and made-wine: 1,2~4%	per hectolitre of product	£65.94	반출과세
	Wine and made-wine: 4~5,5%	per hectolitre of product	£90.68	
	Still wine and made-wine: 5,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214.02	
	Wine and made-wine: 15~22%	per hectolitre of product	£285.33	
	Wine and made-wine: 22% 초과	per litre of pure alcohol	£22.64	
	Sparkling wine and made-wine: 5,5~8,5%	per hectolitre of product	£207.20	
	Sparkling wine and made-wine: 8,5~15%	per hectolitre of product	£274.13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영국 국세청(HMRC), "BN86-Alcohol duty: Rates" <http://www.hmrc.gov.uk/budget2009/bn86.pdf>

2) 면세 품목 및 운영방법

□ 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부과된 주세의 환급⁶⁹⁾

- 적격한 제품의 제조 및 생산에 사용된 증류주, 맥주, 와인, 과실주에 부과된 주세를 환급하는 제도임.
- 적격한 제품이란 알코올이 소량 함유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임.
 - － 알코올도수 12%를 초과하지 않는 음료

69) 영국 국세청(HMRC), "Notice 41 Alcoholic ingredients Relief", 2009. 10.

- 초콜릿 100kg당 알코올 8.5리터 미만 포함된 초콜릿
- 최종 제품 100kg당 알코올 5리터 미만 포함된 기타 식품(음료 포함)
- 비네가(vinegar)⁷⁰⁾

□ 증류주(spirits)에 대한 비과세⁷¹⁾

- 특정 제조 공정에 사용되었거나 의료 및 과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증류주의 경우 주세가 부과되지 않음.
- 적용되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최종 제품이 증류주가 아니어야 함.

□ 변성알코올(denatured alcohol⁷²⁾)의 생산, 판매, 사용에 대한 감면⁷³⁾

- 특정 물질을 첨가하여 성질이 변한 증류주가 제조공정에 사용된 경우 감면(relief)이 허용됨.
- 변성알코올의 종류에는 CDA(completely denatured alcohol), IDA(industrial denatured alcohol), TSDA(trade specific denatured alcohol)이 있음.

□ 과실주에 대한 미납세 반출 대상

- 수출
- 외교관 영국 내의 visiting force에 제공
- 다른 과실주 등록 장소로 이동
- 물품 창고에 보관
- 비네거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네거 제조자의 장소로 이동
- 거래샘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외에 자신이 재배한 농작물로 생산한 과실주인 경우 자체 소비 부분에 대하여

70) 사과주를 초산발효시킨 것

71) 영국 국세청(HMRC), "Notice 47 Duty free spirits: use in manufacture or for medical or scientific purposes"

72) 변성알콜(denatured alcohol)이란 변성제를 첨가함으로써 음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임.

73) 영국 국세청(HMRC), "Notice 473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denatured alcohol"

세금 납부 없이 반출이 가능함.

□ 과실주 및 와인의 경우 자연적인 감소 및 기타 합당한 사유가 있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등록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실
-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품
- 알코올도수 1.2% 미만의 과실주, 와인
- 샘플용
- 생산에 사용된 과일을 직접 재배한 개인, 회사 등이 직접 소비하는 과실주, 와인

나. 유류세

1) 개요 및 현황

□ 과세대상

- 모든 차량용 및 난방용 연료에 대해 excise duty가 부과됨.

□ 납세의무자

- hydrocarbon oils과 대체연료를 생산하고 수입하는 자

□ 과세시기

- 유류가 수입되었을 때 또는 유류가 영국 내에서 생산되고 창고에서 가정으로 배달될 때 유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

□ 세율

〈표 Ⅲ-12〉 영국의 유류세 세율

		단위	2009년 4월 1일 이후	2009년 9월 1일 이후
중유	중유(Heavy oil (diesel))	ℓ 당	0.5419	0.5619
경유	무연휘발유(Unleaded petrol)	ℓ 당	0.5419	0.5619
할인된 유류 및 바이오연 료 (Rebated oils & rebated biofuels)	용광로경유(Light oil delivered to an approved person for use as furnace fuel)	ℓ 당	0.1000	0.1037
	Marked gas oil	ℓ 당	0.1042	0.1080
	Fuel oil	ℓ 당	0.1000	0.1037
	Heavy oil other than fuel oil, gas oil or kerosene used as fuel	ℓ 당	0.1000	0.1037
	비주행용 또는 특정 운수장비용 등유(Kerosene to be used as motor fuel off-road or in an excepted vehicle)	ℓ 당	0.1042	0.1080
	Biodiesel for off-road use	ℓ 당	0.1042	0.1080
	Biodiesel blended with gas oil	ℓ 당	0.1042	0.1080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Biodiesel)	ℓ 당	0.3419	0.3619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ℓ 당	0.3419	0.3619
주행용 가스 연료	천연가스(Road fuel Natural Gas (NG), including biogas)	ℓ 당	0.1926	0.2216
	기타가스(Road fuel gas other than NG, e.g. Liquefied Petroleum Gas (LPG))	ℓ 당	0.2482	0.2767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briefs/excise-duty/brief2209.htm>

<http://www.hmrc.gov.uk/budget2009/bn66.pdf>

2)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발전에 사용된 유류에 대한 감면⁷⁴⁾

- 중유 및 경유(rebated heavy or light oil)를 사용하는 전기 발전기는 유류세(hydrocarbon oil duty)를 납부하였으나 발전기에 의해 생성된 전기에 climate change levy가 부과됨에 따라 coal이나 천연가스(natural gas)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74) 영국 국세청(HMRC), "Notice 175 Motor and heating fuels: relief from excise duty on oils used to generate electricity"

발전기는 투입된 연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음.

○ 도입배경

- 정부는 2006.1.1.부터 발전기에 사용된 유류에 대한 세금감면을 도입하게 되었음.
- 이러한 감면조치는 투입 연료에 대해 hydrocarbon oil duty를 부과하고 생성된 전기에 climate change levy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에너지제품과 과세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감면방법

- 적절한 신청자에게 국세청이 세액을 환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원예업에 사용된 증유에 대한 유류세 환급⁷⁵⁾

○ 적용대상 유류

- heavy mineral(hydrocarbon) oil
- 판매를 위한 원예작물을 기르기 위한 건물, 토지, 배양액의 난방 등에 사용된 연료이어야 함.

□ 미납세 반출

- 소비세 비과세 설비에 사용하는 차량용 및 난방용 연료의 경우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

75) 영국 국세청(HMRC), "Notice 183 Repayment of excise duty on heavy oil used by growers of horticultural produce", October 2009.

다. 담배세

1) 개요 및 현황

□ 과세대상 담배의 종류

- 담배, 시가, 손으로 마는 담배, 기타 담배(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발생시기

- 담배의 제조업자 및 담배완제품의 수입업자
- 수입담배의 경우 영국으로 들어오는 시점, 제조담배의 경우 흡연가능한 상태로 제조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함.

□ Finance Bill 2009를 통해 영국에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2%씩 인상되었으며 2009.4.22부터 적용됨.

- 〈표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궐련(cigarettes)은 소매가격의 24%를 적용한 금액에 1,000 개비당 £114.31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고 그 외의 담배 유형들은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임.
- 적용 세율은 담배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표 Ⅲ-13〉 영국의 담배세 세율

종류	단위	세율
궐련(cigarettes)	소매가격의 24% + 1000개비당 £114.31	
시가(cigars)	kg	£173.13
hand-rolling tobacco	kg	£124.45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	kg	£76.12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영국 국세청(HMRC), "BN85-Tobacco Products duty: Rates"

<http://www.hmrc.gov.uk/budget2009/bn85.pdf>

2) 면세품목 및 운영방법

□ 다음 용도로 사용된 경우 담배제품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과학 및 의료 연구, 기타 실험에 사용되는 제품
 - － 과세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담배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담배 제품을 사용하려면, 관련 담배제품을 취득하기 전에 HMRC에 신청하여야 함.
 - － 신청시 관련 담배제품, 연구 및 실험 목적, 사용될 장소 등을 신고함.
- 보건당국(Department of Health)에서 요구하는 타르, 티고틴 및 기타 실험을 위해 등록된 창고에서 반출하는 샘플 제품
-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위해 반출하는 샘플 제품

□ 미납세 반출

- 다음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이 허용됨.
 - － 등록된 공장에서 등록된 창고로의 이동
 - － 등록된 창고에서 다른 등록된 창고로의 이동
 - － 장관이 인정하는 폐기처분, 재활용 및 재포장의 경우

□ 납부한 세액의 환급

- 고객으로부터 등록된 창고로 반입되거나 세금을 납부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다시 창고로 반입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한 세액에서 해당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상계할 수 있음.
 - － 이러한 경우 반입된 제품은 재활용 및 재포장되거나 파손하거나 파손할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
- 반입된 제품이 판매 가능한 상태이고 재활용이나 재포장하지 않은 채로 재판매할 수 있는 경우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님.

4. 독일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대응하는 독일의 세목은 Verbrauchsteuern(이하 ‘개별소비세’) 임.

○ 독일 개별소비세는 주로 연방세로 분류됨.

－ 맥주세의 경우, 세수 중 10억유로 초과분만 연방세로 징수됨⁷⁶⁾.

○ 다만, 지방세 중에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 있음.

－ 이에는 경주복권세, 소방세, 유흥세, 음료수세 등이 있음⁷⁷⁾.

－ 본 연구에서는 세수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방세로 분류된 개별소비세로 연구범위를 한정함.

□ 현재 독일에서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음⁷⁸⁾.

○ 에너지세 (Energiesteuer) : 연방세

○ 담배세 (Tabaksteuer) : 연방세

○ 전기세 (Stromsteuer) : 연방세

○ 주류관련 소비세

－ 코냑세⁷⁹⁾ (Branntweinsteuer) : 연방세

－ 알코올함유음료수세 (Alkopopsteuer) : 연방세

－ 맥주세 (Biersteuer) : 세수 중 10억유로 초과분만 연방세, 미만분은 주세

－ 샴페인세 및 중간생산물세 (Schaumwein-/Zwischenerzeugnissteuer) : 연방세

○ 커피세 (Kaffeesteuer) : 연방세

□ 최근 개별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를 초과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세수규모는 다음과 같음.

76) http://www.zoll.de/b0_zoll_und_steuern/b0_verbrauchsteuern/h0_biersteuer/index.html

7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 p. 312,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78) http://www.zoll.de/b0_zoll_und_steuern/b0_verbrauchsteuern/index.html

79) Branntweinsteuer은 증류과정으로 취득된 화주를 총칭하나 편의상 인지도가 높은 코냑세로 칭함.

〈표 Ⅲ-14〉 세목별 조세수입 추세

(단위 : 억유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에너지세	418	401	399	390	392
담배세	136	143	144	143	136
전기세	66	65	63	64	63
코냑세	22	21	22	20	21
맥주세	8	8	8	8	8
샴페인세 및 중간생산물세	5	4	4	4	5
커피세	10	10	10	11	10
알코올함유음료수세 ¹⁾	-	0,1	0,1	0,1	0,1
합계	665	652	650	640	635

주: 1.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2004년에 신규로 도입된 세목

자료: 독일연방 재무부, <http://www.zoll.de/>

가. 에너지세

1) 개요

☐ 납세의무의 발생 : 에너지를 에너지원 저장소(Steuerlager)에서 유출할 때⁸⁰⁾

○ 미납세 반출의 경우, 저장소에서 에너지원이 제거되는 때

☐ 납세의무자 : 자연인이나 법인인 저장소의 소유자⁸¹⁾

☐ 다음은 에너지세 과세대상과 세율임.

80)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pp. 319~320, 한국조세연구원, 2009.

81) EnergieStG § 8

〈표 Ⅲ-15〉 에너지세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1.a) 유황(Schwefelgehalt) 성분이 10mg/kg 초과인 무연 가솔린	EUR 669,80 per 1,000 liters
1.b) 1st 유황(Schwefelgehalt) 성분이 10mg/kg 이하인 무연 가솔린	EUR 654,50 per 1,000 liters
2nd, 항목번호가 2710 11 31, 2710 11 51, 2710 11 59인 유연 가솔린 (모든 모터가솔린, 항공가솔린)	EUR 721,00 per 1,000 liters
3rd, 항목번호가 2710 19 25과 2710 19 21인 중유 (주로 케로신)	EUR 654,50 per 1,000 liters
4.a) 유황(Schwefelgehalt) 성분이 10mg/kg 초과인 가스오일 (항목번호 2710 19 41에서 2710 19 49)	EUR 485,70 per 1,000 liters
4.b) 유황(Schwefelgehalt) 성분이 10mg/kg 이하인 가스오일 (항목번호가 2710 19 41에서 2710 19 49)	EUR 470,40 per 1,000 liters
5. 중난방유 (항목번호 2710 19 61에서 2710 19 69)	EUR 130,00 euros per 1,000 kilograms
6. 윤활유 (항목번호 2710 19 81에서 2710 19 99)	EUR 485,70 per 1,000 liters
7. 천연가스와 가스형태의 탄화수소물질 ¹⁾	EUR 31,80 per megawatt hour
8.a) 다른 에너지원과 섞이지 않은 액화가스 ²⁾	EUR 409,00 per 1,000 kilograms
8.b) 기타의 액화가스	EUR 1217,00 per 1,000 kilograms
9. 석탄	EUR 0,33 per gigajoule
10. 석유코크 (항목번호 2713)	EUR 0,33 per gigajoule

주: 1.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2018년까지 적용 세율은 13,90euros per megawatt hour

2) 2018년까지 적용 세율은 180,32 per 1,000kilograms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에너지 제품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에너지세가 비과세될 수 있음.

○ 비과세(tax-exempt)될 수 있는 항목은 에너지법에서 제시됨.

○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승인받아야 함.

□ 에너지세 비과세 가능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에너지법 제25조 : 전력이나 난방을 위한 연료 이외의 목적으로 에너지 제품의 사용
- 에너지법 제26조 : 시설의 유지를 위한 에너지 제품의 사용
- 에너지법 제27조 : 항해와 항공을 위한 에너지 제품의 사용
 - － 항해 : 여객, 운송 등 산업적인 항해활동에 관련한 경우에만 해당됨.
 - － 항공 : 여객, 운송, 항공서비스 등 산업적인 항공활동에 관련한 경우에만 해당됨.
- 에너지법 제28조 : 다음의 특정가스에너지의 사용
 - － 농축산물의 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 형태의 탄화수소물질
 - － 폐기물의 저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형태의 탄화수소물질
 - － 하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형태의 탄화수소물질 등

나) 감면제도

□ 특정 에너지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에너지세가 감면(Steuerermäßigung)됨.

- 에너지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에너지세는 감면됨.
- 에너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에너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된 에너지세 세율

〈표 Ⅲ-16〉 에너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에너지세 특례

구분	세율
천연가스, 기타 가스형태의 탄화수소물	EUR 13.90 per megawatt hour
다른 에너지 제품과 혼합되지 않은 액화가스	EUR 180.32 per 1,000kilograms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앞의 세율에 불구하고, 에너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제품의 경우 에너지세 특례가 적용됨.

○ 감면되는 에너지제품의 사용용도

- 난방연료
- 에너지법 제3조에 따라 가스터빈이나 내부연소장치의 가동을 위한 연료
- 에너지법 제3조a에 따르는 설비의 운용

○ 감면되는 에너지제품의 종류

- 적정히 표시된 가스오일 (항목번호 2710 19 41에서 2710 19 49)
- 중난방유 (항목번호 2710 19 61에서 2710 19 69)
- 윤활유 (항목번호 2710 19 81에서 2710 19 99)
- 천연가스와 가스 탄화수소물
- 액화가스

□ 에너지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된 에너지 세율

〈표 Ⅲ-17〉 에너지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에너지세 특례

구분	세율
1.a) 유허성분이 50mg/kg을 초과하는 가스오일 (항목번호 2710 19 41에서 2710 19 49)	2008년 말까지 EUR 61,35 per 1,000 liters, 2009년부터 EUR 76,35 per 1,000 liters
1.b) 유허성분이 50mg/kg 이하인 가스오일 (항목번호 2710 19 41에서 2710 19 49)	EUR 61,35 per 1,000 liters
2. 중난방유 중 항목번호가 2710 19 61에서 2710 19 69까지인 것	EUR 25,00 per 1,000 kilograms
3. 윤활유 중 항목번호가 2710 19 81에서 2710 19 99까지인 것	EUR 61,35 per 1,000 liters
4. 천연가스와 가스 형태의 탄화수소물질	EUR 5,50 per megawatt hour
5. 액화가스	EUR 60,60 per 1,000 kilograms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diesel)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

- 2008년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는 214.80 Euro/1,000의 세율로 에너지세를 과세함.

□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세 감면

〈표 Ⅲ-18〉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세 특례

구분	세율
휘발유, 경유(diesel)	EUR 54.02 per 1,000
LPG	EUR 13.37 per 1000 kilograms ¹⁾
천연가스, 기타 가스 형태의 탄화수소물	EUR 1.00 per MWh ²⁾

주: 1) 2009년 12월 31일에 종료

2)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과세물품이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Steuerlager) 사이에서 이동할 경우 과세가 유보됨.

- 미납세 반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자임.
-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제거되는 시점에 에너지세가 과세됨.

3) 환급제도

□ 에너지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다음의 특정한 지역에,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면제, 환급 등 배상(Entlastung)을 받을 수 있음.

- 보세지역(Steuergebiet) 내부 간 이동 : § 46 EnergieStG
- 세사용을 목적으로 공장에 유입 : § 47 EnergieStG
- 다른 유류제품과 혼합하기 위한 경우 : § 48 EnergieStG

- 휘발유와 액화가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 49 EnergieStG
- 바이오연료와 바이오난방연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 50 EnergieStG
- 항해나 항공운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 52 EnergieStG
- 전기발생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 53 EnergieStG
- 대중교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 56 EnergieStG
- 농업을 위한 시설물에 사용하는 경우 : § 57 EnergieStG, 등

나. 전기세

1) 개요

- 전기생산자가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점에, 또는 제조업자가 스스로의 사용을 위하여 전력망에서 유출하는 시점에 과세의무가 확정됨.
 - 납세의무자는 전기제조업자 또는 자가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임.

- 과세대상은 전기이며, 이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Ⅲ-19〉 전기세의 세율

기간	Amount of tax for 1 MWh
2001년 01월 01일 ~ 2001년 12월 31일	EUR 15,34
2002년 01월 01일 ~ 2002년 12월 31일	EUR 17,90
2003년 01월 01일 이후	EUR 20,50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다음의 특정 전기는 전기세가 면세(tax-exemption)될 수 있음⁸²⁾.

-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
 - － 재생에너지는 수소, 풍력, 태양열, 지열, 쓰레기 및 하수 등을 원천으로 하는 에너지
-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기
- 2메가와트 이하의 단위로 생산되며 자가소비되는 전기
- 비상전력설비(backup generator)에서 생산된 전기
- 선박, 항공기, 기차에서 생산되는 전기
- 외국군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전기

나) 감면제도

□ 다음의 특정 전기는 전기세가 감면(Steuerermäßigung)됨.

- 야간저장난방기의 운영을 위한 전기
 - － 경감세율 : EUR 12.30/Mw
- 경찰도 등의 운행을 위한 전기
 - － 경감세율 : EUR 11.42/Mw
- 농업이나 제조업에 사용하는 전기
 - － 경감세율 : EUR 12.30/Mw
- 다만, 사용한 전기량이 25Mwh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전기세의 경우, 다른 개별소비세 항목과는 달리 미납세 반출제도는 없음.

82) 전기법(StromStG) 제2조 제7항

○ 이는 전기는 유출과 동시에 소비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3) 환급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전기세가 환급(erstattet), 변상(vergütet)됨.

- 전기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전기는 매년 EUR 512.50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환급됨⁸³⁾.
- 전기생산자가 전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전기세는 면제되거나, 환급됨⁸⁴⁾.

다. 담배세

1) 개요

□ 담배세 납세의무는 저장소에서 담배가 출고될 때 성립됨⁸⁵⁾.

- 납세의무자는 저장소의 소유자임.

□ 담배세 과세대상은 담배임.

- 담배에는 담배(cigarettes), 시가(cigar), 가는 담배(cigarillos) 및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됨.

□ 다음은 담배세 과세대상과 세율임.

83) § 10 Abs. 1 StromStG

84) § 9a StromStG

85) 김유찬, 앞의 책, p. 318.

〈표 Ⅲ-20〉 담배세 과세대상과 세율

기간	세율
담배(cigarettes)	8.27 cents/ea, 소매가의 24.66%
시가(cigar)나 가는 담배(cigarlos)	1.4 cents/ea, 소매가의 1.47%
썰려진 연초(fine)	34.06 EUR/Kg, 소매가의 18.57%. 하지만 최소한 Kg당 53.28%이어야 함.
파이프 담배(pipe)	15.66 EUR/Kg, 소매가의 13.13%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담배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산업적 이용 이외의 경우

☐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세 비과세

- 담배세법(TabStG)에 따라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담배는 담배세가 비과세됨.
-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담배는 다음을 의미함.
 - － 흡연이나 제조의 목적 이외의 사용
 - － 과학적인 실험과 조사를 위한 사용
- 비과세를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이 필요함.

☐ 산업적 이용 이외에 사용되는 담배가 담배세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조사에 투입되는 담배
- 보세창고에서 검사(test)를 위해 사용되는 담배
- 검사(inspection)를 위한 샘플로 사용되는 담배
- 폐기될 담배

○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배되고 소비되는 담배 등

나) 감면제도

☐ 담배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없음.

(3)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담배세의 징수가 유예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음.

3) 환급제도

☐ 다음의 경우 기납부한 담배세를 환급할 수 있음⁸⁶⁾.

- 승인된 제조공장이거나 저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 다른 EC 회원국이나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보세창고의 소유자가 아닌 수입업자나 수취자가 폐기하는 경우

라. 코냑세(Liquor tax)

☐ 코냑세는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인 주정(spirits)에 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임.

1) 개요

☐ 코냑세는 코냑(liquor)이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코냑의 생산업자나 유통업자임.

☐ 코냑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됨.

86) § 22 TabStG and § 24 TabStV

〈표 Ⅲ-21〉 코냑세 세율

구분	순수한 알콜 1헥토리터당 세율
법정세율(코냑세법 제131조 제1항)	EUR1303
보상양조회사(코냑세법 제131조 제2항) ¹⁾	EUR1022
소형 보상양조업자(코냑세법 제131조 제2항)	EUR730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1) 보상양조회사(Abfindungsbrenner)는 양조과정 및 생산량에 있어 세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연 50~300리터의 주정을 생산하는 회사를 의미함.
- 2) 연 400리터 미만의 주정을 생산하는 소형보상양조회사를 의미함.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다음의 생산물은 코냑세가 면세되는 경우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산업적 목적 이외의 경우

☐ 산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음의 알코올은 코냑세가 비과세됨.

- 의약품제조에 사용되는 알코올
- 식초의 생산에 사용되는 알코올
- 약품이나 식품이 아닌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알코올
- 난방이나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알코올 등

☐ 산업적 목적이 아닌 다음의 경우 알코올은 코냑세가 면세됨.

- 완전히 알코올의 특성을 잃을 경우
- 보세창고에서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샘플로 사용할 경우
- 관련 기관의 검사(inspection)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폐기될 경우

나) 감면제도

- ☐ 코냑세에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 과세물품이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Steuerlager) 사이에서 이동할 경우 과세가 유보됨.
 - 미납세 반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자임.
 -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제거되는 시점에 코냑세가 과세됨.

3) 환급제도

- ☐ 코냑세를 이미 납부하였더라도 다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 기납부세액에 대하여 면제, 환급 등 배상(Entlastung)을 받을 수 있음.
 - 다른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되는 향료의 산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
 - 산업적 목적으로 다른 EC회원국으로 과세된 브렌디(Branntwein)를 이동시키는 경우 등

마. 알코올함유음료수세

- ☐ 알코올함유음료수세는 청소년이 음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임.

1) 개요

- ☐ 알코올함유음료수세는 알코올함유음료수가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알코올함유음료수의 생산업자나 유통업자임.

☐ 알코올함유음료수는 알코올함유음료수세법(AlkopopStG)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알코올이 1.2% 이하로 함유된 음료수, 알코올이 1.2% 이상 함유된 발효음료 및 브랜디(brandy)로 구성됨.
- 알코올이 1.2~10% 함유된 알코올음료수(acholic beverage)이어야 함.
- 판매가능하도록 병으로 포장됨.
- 코낙세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해서 과세된 항목이어야 함.

☐ 알코올함유음료수세는 음료수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여 결정됨.

- 섭씨 20도인 상태에서 순수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함.

☐ 세율 : 1hectolitre(100liters)당 EUR 5,550

2) 면세제도 운영방법

☐ 일반적으로 코낙세에서 적용되는 면세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다만, 필요한 검사를 위하여 샘플로 사용할 경우나 폐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실무적 적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⁸⁷⁾.

3) 환급제도

☐ 면세대상이 되는 알코올함유음료수에 대하여 알코올함유음료수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상환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바. 맥주세

☐ 맥주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연방세로 분류되나 세수 중 10억유로까지는 주세로 분류되

87) http://www.zoll.de/b0_zoll_und_steuern/b0_verbrauchsteuern/g1_alkopops/d0_stuerbefreiungen/

어 주의 재정에 포함됨.

1) 개요

- 맥주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인 맥주가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저장소의 소유자임.
- 맥주세의 과세대상인 맥주는 다음과 같음.
 - 몰트(malt)에서 만들어지는 맥주
 - 비알코올음료와 혼합한 맥주혼합물
 - － 다만, 알코올함량이 0.5% 미만인 비알코올음료는 과세되지 않음.
- 맥주세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 맥주세는 맥주의 원증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이를 plato라고 함.
 - 법정세율은 plato 도수에 따라 1hectolitre당 EUR0.787임.
 - － 예를 들어, 12 plato의 맥주(vollbier)의 경우 EUR9.44를 맥주세로 부담함.
 - － 즉, $12 \times 0.787 = \text{EUR}9.44$

〈표 Ⅲ-22〉 맥주세 계산 예시

구분	plato	1hectolitre당 맥주세	0.5liter병당 맥주세
맥주(Vollbier)	11도 plato	EUR8.66	EUR0.04
강한맥주(Starkbier)	16도 plato	EUR2.59	EUR0.06
밀맥주(Weizenbier)	13도 plato	EUR10.23	EUR0.05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소규모 주조업자(Kleinere Brauereien)에 대하여는 감소세율이 적용됨.
 - 소규모 주조업자는 연간 생산량이 200,000hectolitre 이하인 주조업자임.
 - 생산량에 따라 정상세율의 44%까지 감면이 가능함.

〈표 Ⅲ-23〉 소규모 주조업자에 대한 감소세율

연간 생산량	감면율
0 ~ 5,000hectoliter	정상세율의 56.0%
5,000 ~ 10,000hectoliter	정상세율의 67.2%
10,000 ~ 20,000hectoliter	정상세율의 78.4%
20,000 ~ 40,000hectoliter	정상세율의 84.0%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맥주세는 다음의 경우 비과세됨.

- 맥주가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맥주의 산업적 사용 이외의 경우

□ 맥주를 산업적으로 사용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식초의 사용을 위한 사용
- 식품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식품 이외의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 맥주가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비과세되는 경우

- 종업원을 위하여 자가소비용으로 사용된 맥주
- 보세창고 내부나 외부에서 필요한 연구나 검사를 위한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
- 폐기되는 경우
- 가정에서 취미로 생산되는 경우 등.

나) 감면제도

- ☐ 맥주세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 과세물품이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Steuerlager) 사이에서 이동할 경우 과세가 유보됨.
 - 미납세 반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자임.
 -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제거되는 시점에 맥주세가 과세됨.

3) 환급제도

- ☐ 다음의 경우 맥주세는 변제·환급됨.
 - 과세된 맥주가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EC회원국으로 이동될 경우
 - 과세된 맥주가 보세창고 밖에서 폐기되는 경우
 - 과세된 맥주가 보세창고 안에서 보관될 경우

사. 발포성와인과 중간생산물

1) 개요

- ☐ 발포성와인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인 발포성와인 등이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저장소의 소유자임.
- ☐ 발포성와인과 중간생산물에 관한 세법의 규정에 따른 발포성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발포성와인병마개(Schaumweinstopfen)가 있는 병에 보관되는 것

- 이산화탄소 압력이 3 이상인 상태에서 섭씨 20도로 보관되는 것
- 알코올성분이 항목번호 2204, 2205 또는 2206으로 분류되는 것
 - 알코올성분은 전체의 1.2%를 초과하나 15% 이하이어야 함.

□ 중간생산물은 증류된 알코올이 첨가된 발효음료로, 와인(wine)과 주정(spirits)의 중간인 주류라고 볼 수 있음.

- 알코올함량이 1.2~22%임.
- 일반적으로 셰리(sherry), 포트(port) 및 마테이라(madeira)가 이에 해당됨.

□ 세율은 알코올의 양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최종 생산물의 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됨.

〈표 Ⅲ-24〉 발포성와인과 중간생산물 세율

구분	알콜		1hectolitre당 세액	0.75liter 병당 세액
발포성와인	6% 이상		EUR136.0	EUR1.02
	6% 이하		EUR51.0	EUR0.38
중간생산물	15% 이상		EUR153.0	EUR1.15
	15% 이하	특수병마개 등 ¹⁾	EUR136.0	EUR1.02
		기타	EUR102.0	EUR0.76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1) 특수병마개가 있는 병으로 보관, 섭씨 20도에서 보관되며 이산화탄소 압력이 3 이상인 것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발포성와인세는 다음의 경우 비과세됨.

- 발포성와인 등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발포성와인 등의 산업적 사용 이외의 경우

□ 발포성와인을 산업적으로 사용하여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 식초의 사용을 위한 경우
- 식품이나 의약품 이외의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난방과 청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발포성와인이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비과세되는 경우

- 보세창고 내부나 외부에서 필요한 연구나 검사를 위한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
- 관계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위하여 샘플로 사용되는 경우
- 폐기되는 경우

나) 감면제도

□ 발포성와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과세물품이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Steuerlager) 사이에서 이동할 경우 과세가 유보됨.

- 미납세 반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자임.
-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제거되는 시점에 발포성와인세가 과세됨.

3) 환급제도

□ 다음의 경우 발포성와인세는 변제·환급됨

- 음료수나 다른 식품을 위한 향신료의 상업적인 생산을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 과세된 중간생산물의 경우, 다른 EC회원국에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 과세된 중간생산물의 경우, 보세창고 안에서 보관될 경우

아. 커피세

1) 개요

- ☐ 맥주세 납세의무는 과세대상인 커피가 저장소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저장소의 소유자임.
- ☐ 커피는 볶은원두커피(roasted coffee)와 인스턴트커피(instant coffee)로 구분함.
 - 볶은원두커피는 항목번호가 0901인 것
 - 인스턴트커피는 커피추출물로 항목번호가 2101 10인 것
 - 커피에 기초한 제조식품도 과세대상이 됨.

〈표 Ⅲ-25〉 커피세율

구분	1Kg당 세액
볶은원두커피	EUR2,19
인스턴트커피	EUR4,78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 ☐ 커피에 기초한 제조식품은 다음과 같이 별도의 세율을 적용받음.

〈표 Ⅲ-26〉 볶은원두커피가 포함된 제조식품의 커피세율

볶은원두커피 포함량	제조식품 1Kg당 세액
10 ~ 100g	EUR0,12
100 ~ 300g	EUR0,43
300 ~ 500g	EUR0,86
500 ~ 700g	EUR1,32
700 ~ 900g	EUR1,76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표 Ⅲ-27〉 수용성커피를 포함한 제조식품의 커피세율

볶은원두커피 포함량	제조식품 1Kg당 세액
10 ~ 100g	EUR 0.26
100 ~ 300g	EUR 0.94
300 ~ 500g	EUR 1.91
500 ~ 700g	EUR 2.86
700 ~ 900g	EUR 3.83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조건부 면세제도

☐ 커피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공식적인 감독하에 폐기하는 경우
- 조세목적의 검사를 위하여 샘플로 사용하는 경우
- 커피의 품질과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 개인적인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는 경우 등

☐ 커피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대상은 오직 커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카푸치노, 아이스커피 및 카페올레와 같은 커피기반식품은 대상이 아님.

나) 감면제도

☐ 커피세는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다) 미납세 반출제도(Steueraussetzungsverfahren)

☐ 커피에 대해서만 미납세 반출제도의 적용이 가능

□ 과세물품이 과세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Steuerlager) 사이에서 이동할 경우 과세가 유보됨⁸⁸⁾.

- 미납세 반출제도의 혜택을 받는 자는 납세의무자임.
-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제거되는 시점에 커피세가 과세됨.

5. 호주

□ 개별소비세(excise duty)는 호주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생산물에 부과되는 소비세임.

□ 개별소비세(excise tax)의 과세대상 생산물

- 알코올(alcohol)
 - 맥주, 브랜디, 기타 주정(spirits) 및 알코올함유음료수(ready-to-drink beverage)와 같은 음료수를 포함함.
 - 다만, 와인은 개별소비세(excise duty)에는 제외되며, 와인균등세(wine equalisation tax)로 과세함.
- 석유(petroleum)
 - 경유(diesel), 휘발유(petrol), 항공유, 난방유, 케로신, 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및 원유를 포함함.
- 담배(tobacco)
 - 쥘렌(cigarettes), 시가(cigar), 담배(tobacco) 및 코담배(snuff)를 포함함.

88) § 14 Abs. 1 KaffeeStG

〈표 Ⅲ-28〉 개별소비세(excise) 세수추세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04-05	05-06	06-07	07-08	08-09
개별소비세	21,888	21,814	22,749	23,727	24,373
세수비중	10.13%	9.30%	9.10%	8.76%	9.21%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ATO annual report 2008-09

가. 알코올(alcohol)세

1) 개요

□ 호주에서 생산되는 과세대상 알코올 생산물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의 제조자 또는 과세대상의 소유자가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 － 다만, 맥주 제조자가 산업적 시설과 설비를 갖춘 지역에서 대중적인 공급에 관련될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를 제공하는 사람이 맥주에 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음.

□ 과세대상은 맥주, 브랜디, 와인 등임.

- 맥주는 다음을 만족하는 양조주임.
 - － 곡물에서 추출한 수분포함 추출물의 발효물이어야 함.
 - － 호프(hop), 호프 추출물로 구성되어야 함.
 - － 설탕의 무게가 4% 이상이어야 함.
 - － 인공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아야 함.
 - － 알코올함량이 1.15% 이상이어야 함.
- 브랜디 : 포도와인으로부터 증류한 주정
- 포도와인 : A new tax system (wine equalisation tax) act 1999 subsection 33-A에서 규정한 와인
 - － 포도와인(발포성 와인 포함)

- 포도와인제품
- 기타 과실와인과 채소와인
- 사과발효주(cider)와 배발효주(perry)
- 벌꿀주(mead)와 정종(sake) 등
- 기타 알코올함유음료수 : 알코올이 1.15% 이상 함유된 음료수나 다음은 제외
 - 맥주, 브랜디, 와인

□ 다음은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의 과세대상과 세율임.

〈표 Ⅲ-29〉 알코올 관련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분류	세율
맥주	48litres가 넘지 않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35.24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48litres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7.03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48litres가 넘지 않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3.5%인 맥주	알코올 1리터당 \$41.06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48litres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3.5%인 맥주	알코올 1리터당 \$22.09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48litres가 넘지 않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41.06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48litres를 초과하는 개별 용기에 포장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28.91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산업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되었으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2.47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산업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되었으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알코올함량이 3%를 초과하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2.87 (알코올함량이 1.15%를 초과한 알코올)
	기타 알코올함량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알코올 1리터당 \$69.57
주정, 기타 알코올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	브랜디	알코올 1리터당 \$64.96
	기타 알코올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음료수	알코올 1리터당 \$69.57
	기타 주정	알코올 1리터당 \$69.57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excise tariff working page, 28 Aug 2009, <http://law.ato.gov.au/atolaw/print.htm>

- 와인균등세(WET)의 세율은 도매가(wholesale value)의 29%임.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무조건 면세 항목

□ 비과세되는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다음과 같음.

- 개별소비세법 1901(Excise Act 1901) 77FD에 따라 호주 와인에 첨가된 주정
- 개별소비세법 1901(Excise Act 1901) 77FE에서 분류된 개인에 의해서 사용되는 주정
 - － 위의 규정에서 수량요건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또한 그 사용목적은 산업, 제조, 과학, 의학, 및 교육상 목적에 한함.
- 개별소비세법 1901 (Excise Act 1901) 77FF에 따라 산업, 제조, 과학, 의학, 및 교육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정
- 개별소비세법 1901 (Excise Act 1901) 77FG에 의한 산식에 따라 변성된 주정

나) 조건부 면세제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부 면세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미납세 반출제도

□ 승인된 장소로부터 과세대상 물품(호주에서 제조한 알콜)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 계속적인 이동 승인(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 : 특정한 승인 장소 간에 정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일시적 이동 승인(a single movement permission) : 승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소비세 과세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목적 이동 승인(export movement permission) : 소비세 과세물품을 승인 장소

에서 항구나 공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3) 환급제도

□ 이미 납부한 소비세나 확정된 납세의무는 변제(refund), 환급(drawback) 또는 면제(remission)될 수 있음.

○ 변제(refund) : 자가소비 등을 위하여 이동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변제 청구가 가능함.

○ 환급(drawback) : 소비세를 납부한 이후 수출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환급 청구가 가능함.

○ 면제(remission) :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이 이동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나. 담배세

1) 개요

□ 담배(tabacco) : 농장에서 담뱃잎을 말리는 작업을 제외한 다른 처리를 해야 하는 담뱃잎을 의미함.

□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과 같음.

〈표 Ⅲ-30〉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구분	세율
스틱당 담배성분이 0.8g을 초과하지 않는 것	스틱(stick)당 \$0,25833
기타	담배성분 1kg당 \$322.93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excise tariff working page, 28 Aug 2009. <http://law.ato.gov.au/atolaw/print.htm>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무조건 면세항목

☐ 면세항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건부 면세제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부 면세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미납세 반출제도

☐ 승인된 장소로부터 과세대상 물품(담배제품, 담배씨, 담배줄기 및 담뱃잎)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 계속적인 이동 승인(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 : 특정한 승인 장소 간에 정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일시적 이동 승인(a single movement permission) : 승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소비세 과세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목적 이동 승인(export movement permission) : 소비세 과세물품을 승인 장소에서 항구나 공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3) 환급제도

☐ 이미 납부한 소비세나 확정된 납세의무는 변제(refund), 환급(drawback) 또는 면제(remission)될 수 있음.

○ 변제(refund) : 자가소비 등을 위하여 이동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변제 청구가 가능함.

- 환급(drawback) : 소비세를 납부한 이후 수출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환급 청구가 가능함.
- 면제(remission) :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이 이동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유류세

1) 개요

□ 다음은 유류에 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임.

〈표 Ⅲ-31〉 유류 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분류	세율
원유, 응축석유 등	응축석유(petroleum condensate), 원유(stabilised crude petroleum oil), 휘발유(항공유 제외)	리터당 \$0.38143
	항공유	리터당 \$0.02854
	휘발유와 에탄올 혼합물	제6G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
	경유(바이오디젤 제외)	리터당 \$0.38143
	경유와 에탄올 혼합물, 경유와 바이오디젤 혼합물	제6G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
	난방유	리터당 \$0.38143
	케로신(kerosene,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 제외)	리터당 \$0.38143
	항공기에 사용되는 케로신	리터당 \$0.02854
	연료유(fuel oil)	리터당 \$0.38143
	내연기관에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	리터당 \$0.38143
	바이오디젤	리터당 \$0.38143
	방향성 있는 액화탄화수소(liquid aromatic hydrocarbon)	리터당 \$0.38143
	테레빈유(turpentine)	리터당 \$0.38143
	백유(white spirit)	리터당 \$0.38143
연료를 위한 생산품 등	휘발유에 기초한 오일(oil) 및 이와 유사한 합성물 (다만 grease는 제외)	리터당 \$0.05449
	재사용을 위하여 recycle된 휘발유에 기초한 오일(oil) 및 이와 유사한 합성물(다만 grease는 제외)	리터당 \$0.05449
	휘발유에 기초한 그리스(grease)	Kg당 \$0.05449
	재사용을 위하여 recycle된 휘발유에 기초한 그리스(grease)	Kg당 \$0.05449

주: 2009년 12월 현재 세율임.

자료: excise tariff working page, 28 Aug 2009. <http://law.ato.gov.au/atolaw/print.htm>

2) 면세제도 운영방법

가) 무조건 면세 항목

□ 다음은 유류에 관한 개별소비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임.

- (Resource Rent Tax Area)에서 생산되었거나 해외 면세원유(exempt offshore oil)는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임.
 - － 조례(by-law)에 의하여 비과세가 규정될 경우, 비과세됨.
 - － 새로운 유류(new oil) : 다만 제6C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
 - － 중질유(intermediate oil) : 다만 제6D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
 - － 기타 : 다만 제6B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
 - － 다만, 도착이 지체된 오일(delay-entry oil)은 지체유류세율이 적용됨.
- (Resource Rent Tax Area)에서 응축되었거나 규정된 지역(prescribed source)에서 응축되었거나 해외에서 응축된 면세 원유(stabilised crude oil)
 - － 조례(by-law)에 의하여 비과세가 규정될 경우, 비과세됨.
 - － 기타 : 다만 제6CA조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

나) 조건부 면세제도

□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부 면세제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미납세 반출제도

- 승인된 장소로부터 과세대상 물품(석유제품, 바이오디젤과 같은 특정 비석유제품)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 계속적인 이동 승인(continuing movement permission) : 특정한 승인 장소 간에 정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일시적 이동 승인(a single movement permission) : 승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소비

세 과세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 개별적인 이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목적 이동 승인(export movement permission) : 소비세 과세물품을 승인 장소에서 항구나 공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

3) 환급제도

□ 이미 납부한 소비세나 확정된 납세의무는 변제(refund), 환급(drawback) 또는 면제(remission)될 수 있음.

- 변제(refund) : 자가소비 등을 위하여 이동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변제 청구가 가능함.
- 환급(drawback) : 소비세를 납부한 이후 수출된 과세물품에 관하여 납부한 소비세에 대해서 환급 청구가 가능함.
- 면제(remission) : 일반적으로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이 이동되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IV.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호주의 개별소비세제 과세현황 및 비과세·감면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보면, 개별 물품도 다양하고 특정 장소의 입장 행위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 범위가 다양함.
 - 그러나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는 개별 물품별로 세목이 구분되어 있고 특정 행위에 대한 과세도 별도의 세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물품에 대한 과세 중 특히 국세(연방세)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음.
- 국가별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다양하지만 물품에 대한 과세로서 국세(연방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세목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류, 유류 및 담배제품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과세대상 물품 측면에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의 경우 총기류와 탄약의 판매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독일의 경우 커피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커피세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소비세제의 경우 대부분 제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반출이라는 것이 수익획득과정이 완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나 조사대상 국가에서도 대부분 반출시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 주류의 경우, 미국은 주류가 생산되거나 수입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및 호주의 경우

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장 또는 저장장소에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류 관련 과세도 대부분 제조장이나 저장장소에서 반출될 때 또는 수입되는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개별소비세의 경우 반출 시점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소비세제의 과세대상 물품 중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하는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음.

○ 비과세·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정부용품, 수출용품,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비과세·감면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비과세·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반출 시점에 과세되었으나 비과세·감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세액환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 그동안 개별소비세 관련 연구는 대부분 각 국가의 품목별 세율체계 및 세수효과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본 연구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비롯한 비과세 및 면세제도 등 개별소비세제의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문헌

- 구성권, 「개별소비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 2009. 4.
-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김성순, 「한국의 소비세제 개편방안」, 『산업연구』, 2008.
-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성명재 · 박임수,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2007.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CCH Tax Law Editors, U.S. Master Excise Tax Guide, 5th Edition, CCH Incorporated, 2005.
- 羽深成樹(編), 『圖說 日本の 税制』, 財經詳報社, 2005.
- 독일 국세청, <http://www.steuerthek.de/>
- 미국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홈페이지, www.ttb.gov.
- 영국 국세청(HMRC), <http://www.hmrc.gov.uk/>
- 일본 국세청, <http://www.nta.go.jp/>
-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 <http://www.ibfd.org/>

세법연구 09-08

**외국의 개별소비세 운영 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2009년 12월 23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박상원 · 송은주 · 김태훈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74-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